

2026년도 정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국	가	보	훈	부
금	용	위	원	회

2025. 11

정 무 위 원 회

목 차

I . 소관부처 회부 기금운용계획안	1
II . 심사경과	2
III .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및 증감내역	4
IV . 전문위원 검토보고: <붙임> 참조	68
V . 대체토론의 요지	68
VI .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69
VII . 찬반토론의 요지	70
VIII . 심사결과	71
IX . 소수의견의 요지	71
X . 부대의견	71
※ 첨부: 2026년도 정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조정내역	73
※ 붙임: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87

2026년도 정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2025. 11.
정무위원회

I. 소관부처 회부 기금운용계획안

1. 국가보훈부 소관

가. 보훈기금 : 수입 및 지출

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수입 및 지출

2. 금융위원회 소관

가. 신용보증기금 : 수입 및 지출

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수입 및 지출

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수입 및 지출

라. 공적자금상환기금 : 수입 및 지출

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수입 및 지출

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수입 및 지출

Ⅱ. 심 사 경 과

1. 제출일자 : 2025년 9월 3일

2. 회부일자 : 2025년 9월 4일

3. 상정 및 의결일자

가. 국가보훈부 소관

○ 제429국회(정기회)

• 제8차 정무위원회(2025. 11. 11.)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5. 11. 12.)

(상정 · 심사)

–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5. 11. 13.)

(상정 · 심사)

• 제9차 정무위원회(2025. 11. 13.)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

나. 금융위원회 소관

○ 제429국회(정기회)

• 제8차 정무위원회(2025. 11. 11.)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5. 11. 12.)

(상정 · 심사)

–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5. 11. 13.)

(상정 · 심사)

- 제9차 정무위원회(2025. 11. 13.)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

Ⅲ.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및 증감내역

【 국가보훈부 소관 】

1. 보훈기금

1) 수입 운용계획안

- 2026년도 보훈기금 수입 운용계획안은 2025년 대비 20.7% 감소한 5,521억 7,500만원이 편성됨.
- 자체수입은 대부원리금, 예탁이자수입, 골프장 운영수입 등으로 2025년 대비 7.1% 감소한 1,830억 1,500만원임.
- 정부내부수입은 복권기금 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원금회수 등으로 2025년 대비 20.4% 감소한 1,154억 5,200만원임.
- 여유자금회수는 사업비 지출을 위한 회수금으로 2025년 대비 28.4% 감소한 2,537억 800만원임.

〈 2026년도 보훈기금 수입 운용계획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계 획(A)	2026년 계 획안(B)	증감 (B-A)	증감률 (B-A)/A
합 계	696,168	552,175	△143,993	△20.7
○ 자체수입	196,930	183,015	△13,915	△7.1
- 재산수입	136,119	122,456	△13,663	△10.0
(골프장 매각대금)	132,000	118,000	(△14,000)	(△10.6)
- 경상이전수입	1,016	578	△438	△43.1
- 골프장운영수입	35,080	35,080	-	-

구 분	2025년 계 획(A)	2026년 계 획안(B)	증 감 (B-A)	증 감 륜 (B-A)/A
- 융자원금 회수	24,715	24,901	△186	△0.8
○ 정부내부수입	145,127	115,452	△29,675	△20.4
- 복권기금전입금	21,553	23,202	1,649	△7.7
- 기금예탁이자수입	120,000	90,000	△30,000	△25.0
- 기금예탁원금회수	3,574	2,250	△1,324	△37.0
○ 여유자금회수	354,111	253,708	△100,403	△28.4

2) 지출 운용계획안

- 2026년도 보훈기금 지출 운용계획안은 2025년 대비 20.7% 감소한 5,521억 7,500만원이 편성됨.
- 사업비는 보훈복지시설 건립 연차소요를 반영하여 2025년 대비 4.0% 증가한 1,206억 6,700만원임.
- 기금운영비는 기금 사업을 위한 경비로 2025년 대비 0.9% 감소한 8억 3,600만원임.
- 정부내부지출은 타 기금 전출금으로 공자기금 예탁 규모를 축소 반영하여 2025년 대비 32.9% 감소한 607억 5,100만원임.
- 여유자금운용은 사업비 집행 후 여유자금을 연기금투자풀에 예탁하는 것으로 2025년 대비 24.3% 감소한 3,699억 2,100만원임.

〈 2026년도 보훈기금 지출 운용계획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계 획(A)	2026년 계 획안(B)	증 감 (B-A)	증 감 륜 (B-A)/A
합 계	696,168	552,175	△143,993	△20.7
○ 사 업 비	116,020	120,667	4,647	4.0
- 국가유공자등위로격려	1,320	1,462	142	10.8
- 중상이자보조기기지급	2,228	2,472	244	11.0
- 국가유공자등노후복지지원	39,771	40,245	474	1.2
- 히어로즈패밀리프로그램	875	1,015	140	16.0
- 보훈트라우마센터설치운영	1,451	1,351	△100	△6.9
- 고령독거국가유공자 AI기반안부확인서비스	-	552	552	순증
- 보훈복지시설건립	3,783	6,031	2,248	59.4
- 보훈요양및양로지원	8,372	8,623	251	3.0
- 장학금	438	-	△438	순감
- 국가유공자등대부(융자)	22,679	22,679	-	-
- 국가유공자등대부관리	10,657	11,100	443	4.2
- 골프장위탁운영	17,643	18,358	715	4.1
- 골프장시설투자	4,077	4,027	△50	△1.2
- 참전기념사업지원	687	845	158	23.0
- 제대군인대부(융자)	1,751	1,619	△132	△7.5
- 제대군인대부관리	288	288	-	-
○ 기금운영비	844	836	△8	△0.9
- 인건비	228	237	9	3.9
- 기금운영비	616	599	△17	△2.8
○ 정부내부지출	90,546	60,751	△29,795	△32.9
- 공무원연금기금전출	74	15	△59	△79.7
- 복권기금전출	472	736	264	55.9
- 공자기금예탁금	90,000	60,000	△30,000	△33.3
○ 여유자금운용	488,758	369,921	△118,837	△24.3

2.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1) 수입 운용계획안

- 2026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수입 운용계획안은 2025년도 대비 1.5% 증가한 1,512억 6,900만원이 편성됨.
- 자체 수입은 예탁금 이자 수입, 친일 귀속재산 매각대금, 광복회관 임대료 등으로 친일 귀속재산 매각 추이, 광복회관 임대 등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7.5% 증가한 94억 700만원임.
- 정부내부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25년 대비 1.3% 증가한 937억 5,400만원임.
- 여유자금회수는 연기금투자폴 사업비 회수금으로 2025년 대비 0.7% 증가한 481억 800만원임.

〈 2026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수입 운용계획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계 획(A)	2026년 계 획안(B)	증 감 (B-A)	증감률 (B-A)/A
합 계	149,093	151,269	2,176	1.5
○ 자체수입	8,751	9,407	656	7.5
- 토지대여료	67	146	79	117.9
- 건물대여료	3,703	3,878	175	4.7
- 기타재산이자수입	1,737	1,813	76	4.4
- 변상금	39	58	19	48.7
- 기타경상이전수입	133	133	-	-
- 토지매각대	3,072	3,379	307	10.0
○ 정부내부수입	92,583	93,754	1,171	1.3
- 일반회계전입금	92,583	93,754	1,171	1.3
○ 여유자금회수	47,759	48,108	349	0.7

2) 지출 운용계획안

- 2026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지출 운용계획안은 2025년 대비 1.5% 증가한 1,512억 6,900만원이 편성됨.
- 사업비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 증액 및 광복회관 관리 증액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1.0% 증가한 1,018억 8,800만원임.
- 기금운영비는 2025년과 동일한 9,400만원임.
- 여유자금운용은 사업비 지출규모 등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2.5% 증가한 492억 8,700만원임.

< 2026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지출 운용계획안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계 획(A)	2026년 계 획안(B)	증 감 (B-A)	증 감 륜 (B-A)/A
합 계	149,093	151,269	2,176	1.5
○ 사업비	100,891	101,888	997	1.0
- 독립유공자및유족지원	96,997	98,097	1,100	1.1
- 독립운동관련문헌발간	469	281	△188	△40.1
- 독립유공자묘소관리	398	398	-	-
- 광복회관관리	3,027	3,112	85	2.8
○ 기금운영비	94	94	-	-
- 인건비	50	52	2	4.0
- 사업운영비	44	42	△2	△4.5
○ 여유자금운용	48,108	49,287	1,179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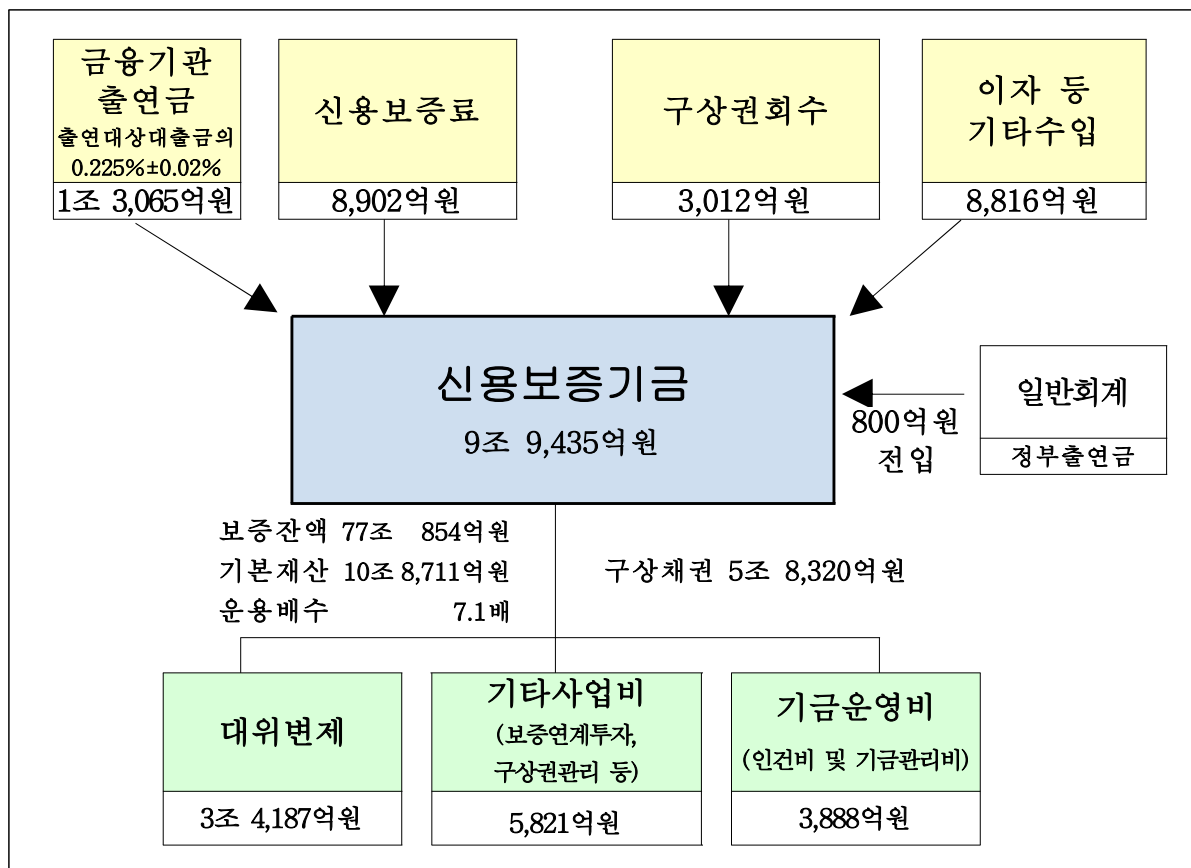
【 금융위원회 소관 】

제1장 신용보증기금

1. 개 요

-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과 회사채등 유동화를 수행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1976년에 설치되었으며, 2025년 9월 말 기준 보증잔액은 79조 3,360억원, 보증업체수는 45만 1,685개임.

〈2026년도 신용보증기금 주요 수입·지출 항목〉



(자료: 금융위원회)

- 2026년도 신용보증기금 운용 규모는 9조 9,435억원으로, 금융기관 출연금(1조 3,065억원), 신용보증료(8,902억원), 구상권 회수(3,012억원), 이자 등 기타수입(8,816억원)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 이를 대위변제(3조 4,187억원), 기금운영비(3,888억원), 보증연계투자 등 기타사업비(5,821억원)에 지출할 계획으로 있음.
- 최근 5년간 기금의 운용규모 추이를 보면, 2022년 12조 9,881억원 수준에서 2023년 12조 3,287억원, 2024년 11조 4,703억원으로 감소한 후 2025년 11조 6,125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6년 9조 9,435억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음.

1. 수입계획안

- 2026년도 신용보증기금 수입계획안은 9조 9,435억 3,600만원으로 2025년 수정계획 대비 1조 6,690억 200만원(14.4%) 감액 편성됨.

〈2026년도 신용보증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합 계	9,444,908	11,512,538	11,612,538	9,943,536	△1,669,002	△14.4
□ 재산수입	303,694	181,828	181,828	114,448	△67,380	△37.1
□ 경상이전수입	2,450,854	2,217,484	2,217,484	2,306,207	88,723	4.0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915,239	980,618	980,618	955,188	△25,430	△2.6
□ 관유물매각대	841	3,255	3,255	3,626	371	11.4
□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5,694,280	8,129,353	8,129,353	6,484,067	△1,645,286	△20.2
□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80,000	-	100,000	80,000	△20,000	△20.0

(자료: 금융위원회)

- ‘재산수입’은 기금의 예치금, 유가증권 등에 대한 이자수입, 투자 배당금, 건물대여료 등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치금 및 유가증권 이자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673억 8,000만원(37.1%) 감소한 1,144억 4,800만원이 편성됨.
- ‘경상이전수입’은 금융기관의 출연금, 구상권 회수, 공탁금 반환, 매출 채권 상환 수입, 새출발기금 채권매각대금 등으로, 출연대상 대출금 증가에 따른 금융기관 출연금 증가, 팩토링금융 사업 확대에 따른 매출채권 상환 수입 증가 및 새출발기금 채권매각 수입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87억 2,300만원(4.0%) 증가한 2조 3,062억

700만원이 편성됨.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은 신용보증료, 수수료, 위탁보증부담금, 고정 자산 매각 이익 등으로, 대환보증 신규 공급 종료에 따른 위탁보증 부담금 수입 감소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54억 3,000만원(2.6%) 감소한 9,551억 8,800만원이 편성됨.
- ‘관유물매각대’는 고정자산 매각 수입, 무형자산 매각 수입 등으로 업무용 건물 및 토지 매각 수입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억 7,100만원 (11.4%) 증가한 36억 2,600만원이 편성됨.
-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는 국공채매각대,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등 여유자금회수에 따른 수입으로, 여유자금회수를 순계기준으로 계상하여 전년 대비 1조 6,452억 8,600만원(20.2%) 감소한 6조 4,840억 6,700만원이 편성됨.
-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는 정부출연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관련 수입으로, 정부출연금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200억원(20.0%) 감소한 800억원이 편성됨.

2. 지출계획안

1) 총괄

- 2026년도 신용보증기금 지출계획안은 9조 9,435억 3,600만원으로 2025년 수정계획 대비 1조 6,690억 200만원(14.4%) 감액 편성됨.

〈2026년도 신용보증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합 계	9,444,908	11,512,538	11,612,538	9,943,536	△1,669,002	△14.4
□ 사업비	3,420,409	4,411,923	4,411,923	4,000,824	△411,099	△9.3
○ 신보대위변제	2,958,377	3,866,158	3,866,158	3,418,699	△447,459	△11.6
○ 기타사업비	462,032	545,765	545,765	582,125	36,360	6.7
□ 기금운영비	373,250	374,229	383,504	388,809	5,305	1.4
○ 인건비	273,004	285,770	295,045	300,820	5,775	2.0
○ 기타운영비	100,246	88,459	88,459	87,989	△470	△0.5
□ 여유자금운용	5,651,249	6,726,386	6,817,111	5,553,903	△1,263,208	△18.5

(자료: 금융위원회)

- 신용보증기금의 사업비 계획안은 4조 8억 2,400만원으로 대위변제 및 이차보전지원 감소 등으로 인해 2025년도 계획 대비 4,110억 9,900만원(9.3%) 감소하였으며, 기금운영비 계획안은 3,888억 900만원으로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을 반영하여 2025년도 계획 대비 53억 500만원(1.4%) 증가함.
- 2026년도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규모는 5조 5,539억 300만원으로 2025년도 계획 대비 1조 2,632억 800만원(18.5%) 감소함.
- 최근 5년간 신용보증기금의 프로그램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본경비성

프로그램인 기금운영비와 여유자금성 프로그램을 제외한 사업비는 모두 신용보증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음.

〈최근 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별 지출계획 내역〉

(단위: 억원, %)

프로그램명	2021년		2022년		2023년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신용보증금융지원(2400)	28,746	28,997	31,899	33,240	36,935	37,351
기금운영비(3300)	3,604	3,604	3,695	3,770	3,700	4,134
기금간거래(예탁금)(9000)	-	-	-	-	-	-
여유자금운용(9700)	63,512	64,067	85,287	92,871	82,652	81,802
합 계	95,862	96,668	120,881	129,881	123,287	123,287
프로그램명	2024년		2025년		2026년도	
	당초	수정	당초	수정	계획안	
신용보증금융지원(2400)	41,161	41,169	44,119	44,119	40,008	
기금운영비(3300)	3,676	3,810	3,742	3,835	3,888	
기금간거래(예탁금)(9000)	-	-	-	-	-	
여유자금운용(9700)	69,866	69,724	67,264	68,171	55,539	
합 계	114,703	114,703	115,125	116,125	99,435	

(자료: 금융위원회)

2) 사업비

□ 2026년도 신용보증기금 소관 사업비 계획안은 4조 8억 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110억 9,900만원(9.3%)이 감소됨.

○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도 계획 대비 일반보증 대위변제 487억 1,500만원(1.8%), 팩토링금융 500억 4,000만원(25.0%)이 증액 편성되고, 신규사업으로 위기대응 특례보증 대위변제 182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2,383억 5,600만원(68.5%), 대환보증 대위변제 1,676억 7,500만원(51.4%)이 감액 편성되었음.

〈2026년도 신용보증기금 사업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도 계획안(B)	증 감	
		당초	수정(A)		(B-A)	(B-A)/A
□ 사업비	3,420,409	4,411,923	4,411,923	4,000,824	△411,099	△9.3
○ 신보대위변제	2,958,377	3,866,158	3,866,158	3,418,699	△447,459	△11.6
- 일반보증 대위변제	2,228,261	2,645,225	2,645,225	2,693,940	48,715	1.8
-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	133,511	546,887	546,887	438,446	△108,441	△19.8
-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위변제	472,926	347,946	347,946	109,590	△238,356	△68.5
- 대환보증 대위변제	123,679	326,100	326,100	158,425	△167,675	△51.4
- 위기대응 특례보증 대위변제	-	-	-	18,298	18,298	순증
○ 기타사업비	462,032	545,765	545,765	582,125	36,360	6.7
- 보증료환급	97,349	96,377	96,377	86,852	△9,525	△9.9
- 구상권관리	68,788	99,462	99,462	99,462	-	-
- 업무용건물	2,396	14,294	14,294	22,533	8,239	57.6
- 경영지도	16,304	20,252	20,252	20,052	△200	△1.0
- 보증연계투자	65,980	67,540	67,540	67,540	-	-
- 미래성장성평가	2,002	6,335	6,335	6,335	-	-
- 프론트윈운영	5,719	6,660	6,660	6,876	216	3.2
- 이차보전지원	35,565	13,851	13,851	1,372	△12,479	△90.1
- 팩토링금융	150,046	200,160	200,160	250,200	50,040	25.0
- 신용정보(정보화)	1,364	2,034	2,034	2,244	210	10.3
- 신용보증제도 조사·연구	-	1,294	1,294	2,440	1,146	88.6
- 신보IT운영(정보화)	16,519	17,506	17,506	16,219	△1,287	△7.4

(자료: 금융위원회)

- ‘일반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부실률 증가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487억 1,500만원(1.8%) 증가한 2조 6,939억 4,000만원이 편성됨.
-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보증잔액 및 부실률 감소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1,084억 4,100만원(19.8%) 감소한 4,384억 4,600만원이 편성됨.
-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부실률 감소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2,383억 5,600만원(68.5%) 감소한 1,095억 9,000만원이 편성됨.
- ‘대환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신규공급 종료에 따른 보증잔액 감소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1,676억 7,500만원(51.4%) 감소한 1,584억 2,500만원이 편성됨.
- ‘위기대응 특례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위기대응 특례보증 프로그램 시행에 따라 신설된 신규 사업으로, 182억 9,800만원이 편성됨.
- ‘보증료환급’ 사업은 보증기간 중 선취한 보증료를 중도해지 시 환급하여 주는 의무적 지출로, 보증해지 추이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95억 2,500만원(9.9%) 감소한 868억 5,200만원이 편성됨.
- ‘구상권관리’ 사업은 부실발생기업 및 대위변제기업 등에 대하여 채권 보전조치, 소송, 채권회수활동 등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전년 수준과 동일한 994억 6,200만원이 편성됨.
- ‘업무용건물’ 사업은 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노후지점 건물 수선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82억 3,900만원(57.6%) 증가한 225억

3,300만원이 편성됨.

- ‘경영지도’ 사업은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컨설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창업종합지원 등의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원 (1.0%) 감소한 200억 5,200만원이 편성됨.
- ‘보증연계투자’ 사업은 미래가치 및 성장가능성은 높으나 민간으로부터 투자자금 조달이 어려운 창업·혁신형기업 등에 대한 투자지원 사업으로서 전년 수준과 동일한 675억 4,000만원이 편성됨.
- ‘미래성장성평가’ 사업은 재무정보가 부족하더라도 우수기술과 지적 재산 등 혁신역량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래성장성 중심의 조사·심사·평가체계 구축·정보 수집 및 운영·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수준과 동일한 63억 3,500만원이 편성됨.
- ‘프론트원운영’ 사업은 전문 창업 보육공간인 프론트원 건물의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한 사업으로,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2억 1,600만원(3.2%) 증가한 68억 7,600만원이 편성됨.
- ‘이차보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 대출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한시적 사업으로, 대상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지원이 순차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124억 7,900만원(90.1%) 감소한 13억 7,200만원이 편성됨.
- ‘팩토링금융’ 사업은 구매기업의 신용거래위험 확산 방지를 위해 판매

기업의 상거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는 사업으로, 팩토링 공급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500억 4,000만원(25.0%) 증가한 2,502억원이 편성됨.

- ‘신용정보(정보화)’ 사업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해 신뢰성 높은 기업 데이터와 신용정보서비스를 공공·민간에 제공함으로써 기업 지원 강화 및 기업 데이터 시장 활성화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1,000만원(10.3%) 증가한 22억 4,400만원이 편성됨.
- ‘신용보증제도 조사·연구’ 사업은 연구용역을 통해 국정과제 수행 역량을 제고하고, 학술협력 기반 형성 및 금융교육 수행을 통한 금융 소비자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1억 4,600만원 (88.6%) 증가한 24억 4,000만원이 편성됨.
- ‘신보IT운영(정보화)’ 사업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2억 8,700만원(7.4%) 감소한 162억 1,900만원이 편성됨.

3) 기금운영비

□ 2026년도 신용보증기금 기금운영비 계획안은 3,888억 900만원으로,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3억 500만원(1.4%) 증가함.

〈2026년도 신용보증기금 기금운영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기금운영비	373,250	374,229	383,504	388,809	5,305	1.4
○ 인건비	273,004	285,770	295,045	300,820	5,775	2.0
○ 기타운영비	100,246	88,459	88,459	87,989	△470	△0.5
- 기금관리비	100,246	88,459	88,459	87,989	△470	△0.5

(자료: 금융위원회)

- ‘인건비’는 인력증원에 따른 추가소요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7억 7,500만원(2.0%) 증가한 3,008억 2,000만원이 편성됨.
- ‘기금관리비’는 전년 대비 4억 7,000만원(0.5%) 감소한 879억 8,900만원이 편성됨.

4) 여유자금운용

□ 여유자금운용은 신용보증기금의 총수입액 중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자금을 정기예금, 연기금투자품, 국채, 금융채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1조 2,632억 800만원(18.5%) 감소한 5조 5,539억 3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신용보증기금 여유자금운용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여유자금운용	5,651,249	6,726,386	6,817,111	5,553,903	△1,263,208	△18.5
○ 정기예금	2,535,871	2,438,062	2,428,787	1,456,801	△971,986	△40.0
○ 연기금투자품	2,616,000	3,506,872	3,606,872	3,712,507	105,635	2.9
○ 국채	241,390	306,738	306,738	145,680	△161,058	△52.5
○ 국채외채권(금융채 등)	197,642	343,255	343,255	174,816	△168,439	△49.1
○ 기타유가증권	60,347	131,459	131,459	64,099	△67,360	△51.2

(자료: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여유자금운용 수익률 추이〉

(단위: %)

자산별	2021	2022	2023	2024	2025.9.	2026(전망)
□ 예치금	1.27	2.16	3.89	4.30	3.53	2.91
□ 채권	△0.15	△1.86	6.38	4.59	3.51	3.34
□ 수익증권	0.17	△4.38	8.15	6.84	9.62	4.27
계	0.63	△0.63	6.04	5.72	7.69	3.87

(자료: 금융위원회)

3. 주요경영지표계획

□ 2026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은 일반보증 60.8조원, 위기대응특례보증 3.0조원, 소상공인 위탁보증 0.3조원, 대환보증 1.0조원, 유동화회사보증 12.0조원 등 77.1조원 규모로 운용할 예정임. 이는 2025년 대비 4조 65억원 감소한 수준으로, '22.1월 신규 공급 종료된 소상공인 위탁보증 해지 증가와 코로나 19 및 복합위기 대응과정에서 확대된 보증규모의 점진적 정상화 등을 감안한 것임.

□ 2026년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은 2025년 계획(전망치) 대비 9,271억원 감소한 10조 8,711억원 수준으로 운용배수는 7.1배로 예상됨.

〈2026년도 신용보증기금 주요경영지표 계획안〉

(단위: 억원, %, 배)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도 계획안(B)	증감 (B-A)	
		당초	수정(A)		(B-A)	(B-A)/A
□ 보증공급	678,702	653,403	680,647	640,582	△40,065	△5.9
□ 보증잔액	794,711	831,033	780,536	770,854	△9,682	△1.2
□ 기본재산	121,795	100,188	117,982	108,711	△9,271	△7.9
□ 운용배수	6.5	8.3	6.6	7.1	0.5	7.6

주: 총보증 기준

〈최근 신용보증기금 주요경영지표〉

(단위: 억원, 배)

구 분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4년 결산
□ 보증공급	490,878	653,758	652,866	646,493	669,483	678,702
□ 보증잔액	522,161	671,531	785,888	833,689	816,227	794,711
□ 기본재산	53,377	81,922	88,791	105,482	117,227	121,795
□ 운용배수	9.8	8.2	8.9	7.9	7.0	6.5

주: 총보증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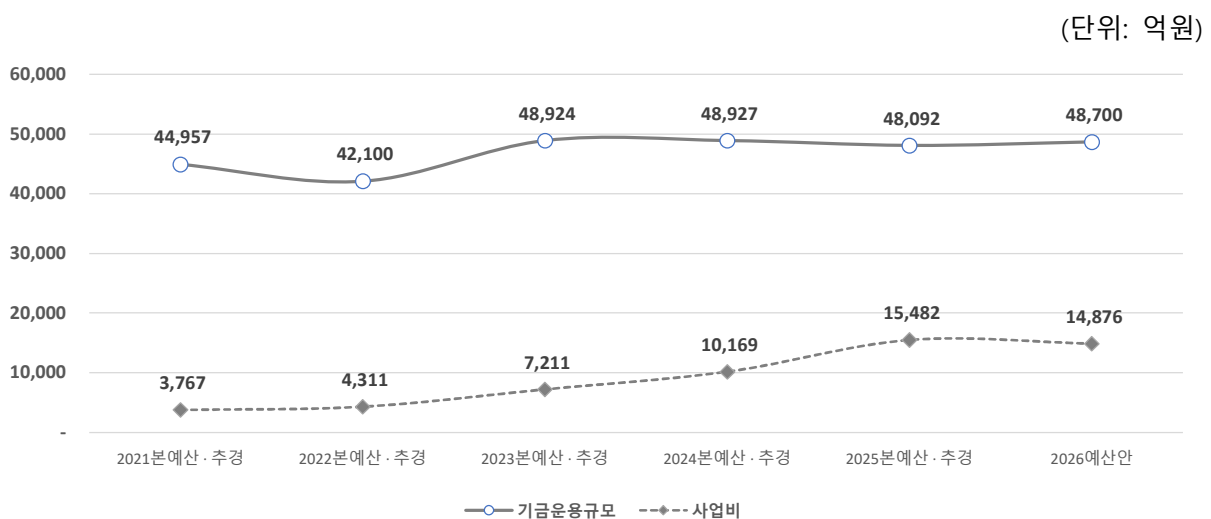
제2장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 개 요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주택금융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7년에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2004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설치근거법이 변경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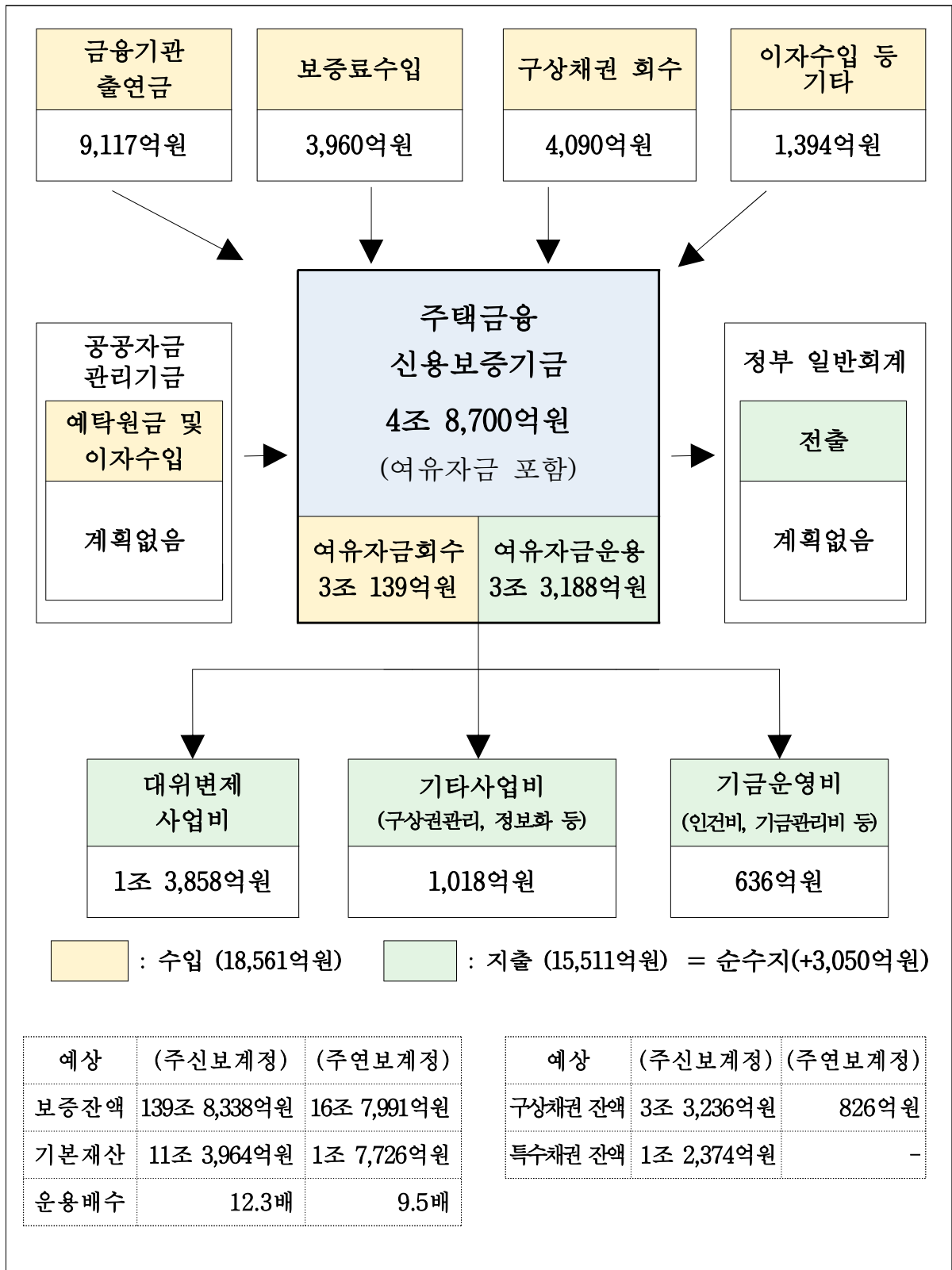
□ 최근 5년간 기금의 운용규모 추이를 보면, 2021년 4조 4,957억원, 2022년 4조 2,100억원 수준으로 축소되었다가 2023년 4조 8,924억원, 2024년 4조 8,927억원, 2025년 4조 8,092억원, 2026년 4조 8,700억원으로 운용규모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운용규모 및 사업비 내역〉



(자료: 금융위원회)

〈2026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요 수입·지출 항목〉



(자료: 금융위원회)

1. 수입계획안

□ 2026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수입계획안은 4조 8,699억 8,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8억 2,400만원(1.3%)이 증액 편성됨.

〈2026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합 계	4,579,651	4,809,162	4,809,162	4,869,986	60,824	1.3
□ 재산수입	158,758	200,554	200,554	139,136	△61,418	△30.6
□ 경상이전수입	1,308,488	1,508,989	1,508,989	1,320,712	△188,277	△12.5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301,403	408,276	408,276	396,218	△12,058	△3.0
□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2,811,002	2,691,343	2,691,343	3,013,920	322,577	12.0
□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	-	-	-	-	-

(자료: 금융위원회)

- ‘재산수입’은 기금의 예치금, 유가증권 등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금리 인하에 따른 예상수익률 하락에 따라 전년 대비 614억 1,800만원(△30.6%) 감소한 1,391억원이 편성됨.
- ‘경상이전수입’은 금융기관의 출연금, 구상권 회수, 공탁금 반환 등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출연요율 하락에 따른 금융기관 출연금 수입 감소로 전년 대비 1,882억 7,700만원(△12.5%) 감소한 1조 3,207억 1,200만원이 편성됨.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은 신용보증료 수입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주택보증 및 주택연금 공급규모 추이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20억 5,800만원(△3.0%) 감소한 3,962억 1,800만원이 편성됨.

-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는 국채, 기타유가증권 매각대 및 통화
금융기관예치금 회수 등 여유자금회수에 따른 수입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5년 만기 도래되는 여유자금 회수금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225억 7,700만원(12.0%) 증가한 3조 139억
2,000만원이 편성됨.
- ‘정부내부수입’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원금회수 및 예탁이자수입
으로, 2026년도는 예탁 및 회수계획이 없음

2. 지출계획안

1) 총괄

□ 2026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지출계획안은 4조 8,699억 8,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8억 2,400만원(1.3%)이 증액 편성됨.

〈2026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합 계	4,579,651	4,809,162	4,809,162	4,869,986	60,824	1.3
□ 사업비	991,265	1,548,198	1,548,653	1,487,559	△61,094	△3.9
○ 대위변제	911,040	1,425,214	1,425,214	1,385,788	△39,426	△2.8
○ 기타사업비	80,225	122,984	123,439	101,771	△21,668	△17.6
□ 기금운영비	56,520	59,637	59,637	63,587	3,950	6.6
○ 인건비	42,805	46,562	46,562	50,641	4,079	8.8
○ 기타운영비	13,715	13,075	13,075	12,946	△129	△1.0
□ 정부내부지출	-	-	-	-	-	-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	-	-	-	-	-
○ 일반회계전출	-	-	-	-	-	-
□ 여유자금운용	3,531,866	3,201,327	3,200,872	3,318,840	117,968	3.7

(자료: 금융위원회)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사업비 계획안은 1조 4,875억 5,900만원으로 주택보증 및 주택연금 대위변제 추세 등을 반영하여 2025년도 수정 계획 대비 610억 9,400만원(△3.9%) 감소함.
- 기금운영비 계획안은 635억 8,700만원으로 예산절감 노력 등의 감액 요소도 반영되었으나, 인건비의 증원 및 인상률 반영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9억 5,000만원(6.6%) 증가함.

○ 2026년도 여유자금운용 규모는 3조 3,188억 4,000만원으로 사업비 지출규모 감소 및 2025년도 만기도래 여유자금 회수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179억 6,800만원(3.7%) 증가함.

□ 최근 5년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프로그램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본 경비성 프로그램인 기금운영비와 내부거래·보전거래 성격의 프로그램을 제외한 사업비는 모두 주택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음.

〈최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별 지출계획 내역〉

(단위: 억원, %)

프로그램명	2021년		2022년		2023년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주택금융지원(2600)	3,766	3,766	4,023	4,311	3,959	7,213
기금운영비(3400)	626	881	633	660	638	753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8500)	-	-	-	-	-	-
일반회계전출금(8900)	2,000	2,000	2,320	2,320	-	-
여유자금운용(9700)	38,565	38,310	35,124	34,809	44,327	40,958
합 계	44,957	44,957	42,100	42,100	48,924	48,924
프로그램명	2024년		2025년		2026년	
	당초	수정	당초	수정	계 획 안	
주택금융지원(2600)	7,814	10,169	15,482	15,487	14,876	
기금운영비(3400)	579	588	597	597	636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8500)	-	-	-	-	-	
일반회계전출금(8900)	-	-	-	-	-	
여유자금운용(9700)	40,579	38,215	32,013	32,008	33,188	
합 계	48,972	48,972	48,092	48,092	48,700	

(자료: 금융위원회)

2) 사업비

- 2026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소관 사업비 계획안은 1조 4,875억 5,900만원으로 2025년 수정 계획 대비 610억 9,400만원(△3.9%) 감액됨.
- 2026년도 사업비 계획안의 주요 증감내역은 보증료환급 21억 4,100만원(6.1%)이 증액 편성되었고, 대위변제 394억 2,600만원(△2.8%), 구상권관리 3억 1,400만원(△0.7%), 사업수수료 35억 2,200만원(△20.9%), 담보설정비용 194억 9,600만원(△86.2%), 주신보IT운영 4억 7,700만원(△7.8%)이 감액 편성됨.

〈2026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사업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도 계획안(B)	증 감 (B-A)	(B-A)/A
		당초	수정(A)			
□ 사업비	991,265	1,548,198	1,548,653	1,487,559	△61,094	△3.9
○ 주신보운영	983,949	1,542,535	1,542,535	1,481,918	△60,617	△3.9
- 대위변제	911,040	1,425,214	1,425,214	1,385,788	△39,426	△2.8
- 보증료환급	32,686	34,893	34,893	37,034	2,141	6.1
- 구상권관리	27,368	42,919	42,919	42,605	△314	△0.7
- 사업수수료	10,489	16,891	16,891	13,369	△3,522	△20.9
- 담보설정비용	2,366	22,618	22,618	3,122	△19,496	△86.2
○ 주신보 IT운영(정보화)	7,316	5,663	6,118	5,641	△477	△7.8

(자료: 금융위원회)

- ‘대위변제’ 사업은 보증이용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금이 보증계약에 의한 보증채무를 금융기관에 직접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지출 항목으로, 주택신용보증 및 주택연금보증의 대위변제 추세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394억 2,600만원(△2.8%) 감소한 1조 3,857억

8,800만원으로 편성됨.

- ‘보증료환급’ 사업은 보증기간 중 중도해지 시 선취한 보증료를 환급하여 주는 지출 항목으로, 사업자보증의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및 주택연금 중도해지 증가추세에 따른 환급액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1억 4,100만원(6.1%) 증가한 370억 3,400만원이 편성됨.
- ‘구상권관리’ 사업은 부실 및 대위변제가 발생한 개인 및 사업자에 대하여 채권보전조치, 소송, 채권회수활동 등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주택보증 및 주택연금 대위변제 규모에 따른 구상권 관리비용 추이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3억 1,400만원(Δ 0.7%) 감소한 426억 500만원이 편성됨.
- ‘사업수수료’ 사업은 보증 취급관련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취급수수료 및 기타 보증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지출 항목으로, 최근 금융기관 대상 위탁수수료의 지급소요 감소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5억 2,200만원이 감소(Δ 20.9%)한 133억 6,900만원이 편성됨.
- ‘담보설정비용’ 사업은 주택연금 대상 주택에 대한 담보설정 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및 제반비용을 납부하기 위한 지출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주택연금 가입주택 담보설정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일몰기한이 2027년말까지 연장된 점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94억 9,600만원(Δ 86.2%)이 감소한 31억 2,200만원이 편성됨.
- ‘주신보 IT운영(정보화)’ 사업은 전산장비 및 시스템 유지 등을 위한

비용으로, 전년대비 4억 7,700만원(△7.8%) 감소한 56억 4,100만원이 편성됨.

3) 기금운영비

□ 기금운영비 계획안은 635억 8,700만원으로 예산절감 노력 등의 감액 요소도 반영되었으나, 인건비의 증원 및 인상률 반영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39억 5,000만원(6.6%) 증액 편성됨.

〈2026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기금운영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기금운영비	56,520	59,637	59,637	63,587	3,950	6.6
○ 인건비	42,805	46,562	46,562	50,641	4,079	8.8
○ 기타운영비	13,715	13,075	13,075	12,946	△129	△1.0
- 기금관리비	12,814	13,075	13,075	12,946	△129	△1.0
- 법인세	901	-	-	-	-	-

(자료: 금융위원회)

- ‘인건비’는 정부지침에 의한 공통 처우개선 및 증원인력의 인건비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40억 7,900만원(8.8%) 증가한 506억 4,100만원이 편성됨.
- ‘기금관리비’는 예산절감 노력으로 전년 대비 1억 2,900만원(△1.0%) 감소한 129억 4,600만원이 편성됨.
- ‘법인세’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법인세에 대한 예산편성 및 결산절차 변경으로 2026년도 계획안에 편성되지 않았음

4) 정부내부지출

□ 2026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정부내부지출 계획은 없으며, 전년과 동일함.

〈2026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정부내부지출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정부내부지출	-	-	-	-	-	-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	-	-	-	-	-
○ 일반회계전출	-	-	-	-	-	-

(자료: 금융위원회)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기금 여유재원의 일부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의 경우 예탁계획 없음.
- ‘일반회계전출’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기금 여유재원의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의 경우 전출계획 없음.

5) 여유자금운용

- ☐ 여유자금운용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총수입액 중 사업비 및 기금 운영비, 정부내부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자금을 정기예금, 연기금투자상품, 국채, 회사채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사업비 지출규모 감소 및 2026년 만기도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179억 6,800만원 (3.7%) 증액된 3조 3,188억 4,0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여유자금운용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여유자금운용	3,531,866	3,201,327	3,200,872	3,318,840	117,968	3.7

(자료: 금융위원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여유자금운용 수익률 추이〉

(단위: %)

자산별	2021	2022	2023	2024	2025.9
☐ 예치금	1.33	2.16	4.18	4.12	2.62
☐ 채권	△0.28	△1.13	6.39	4.66	2.79
☐ 수익증권	3.16	△5.11	9.97	7.53	7.69
계	1.68	△2.58	7.97	6.20	5.74

(자료: 금융위원회)

3. 주요경영지표계획

☐ 주택신용보증계정

- 2026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신용보증계정(이하 “주신보계정”)의 보증공급은 최근 공급실적 추이 및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년 계획 대비 3조 3,700억원(4.5%) 증가한 78조 7,000억원, 보증잔액은 전년 계획 대비 2조 4,589억원(△1.7%) 감소한 139조 8,338억원으로 계획하였음.
- 2026년 주신보계정의 기본재산은 전년 계획 대비 6,310억원(5.9%) 증가한 11조 3,964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그 결과 운용배수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을 계획하였음.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 2026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이하 “주연보계정”)의 보증공급은 최근 공급실적 추이 등을 감안하여 전년 계획대비 7,700억원(△3.1%) 감소한 24조 1,000억원, 연금지급잔액은 전년 계획대비 2조 2,076억원(15.1%) 증가한 16조 7,991억원으로 계획하였음.
- 2026년 주연보계정의 기본재산은 전년 계획 대비 3,133억원(21.5%) 증가한 1조 7,726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그 결과 운용배수는 전년 대비 0.5배 감소한 9.5배에 이를 것을 계획하였음.

〈2026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요경영지표 계획안〉

(단위: 억원, %, 배)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주택신용보증계정						
○ 보증공급	762,576	753,300	753,300	787,000	33,700	4.5
○ 보증잔액(A)	1,309,777	1,422,927	1,422,927	1,398,338	△24,589	△1.7
○ 기본재산(B)	110,595	107,654	107,654	113,964	6,310	5.9
○ 운용배수(A/B)*	11.1	12.4	12.4	12.3	△0.1	△0.8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 보증공급	194,499	248,700	248,700	241,000	△7,700	△3.1
○ 연금지급액	26,406	33,072	33,072	35,507	2,435	7.4
○ 연금지급잔액(C)	119,582	145,915	145,915	167,991	22,076	15.1
○ 기본재산(D)	12,764	14,593	14,593	17,726	3,133	21.5
○ 운용배수(C/D)	9.4	10.0	10.0	9.5	△0.5	△5.0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전세보증과 반환보증의 중복금액을 제외하고 계산

(자료: 금융위원회)

〈최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요경영지표〉

(단위: 억원, 배)

구 분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4년 결산
□ 주택신용보증계정						
○ 보증공급	545,778	646,593	650,943	729,907	755,260	762,576
○ 보증잔액(A)	898,511	1,057,518	1,169,990	1,236,335	1,308,230	1,309,777
○ 기본재산(B)	81,695	79,175	86,654	88,993	100,176	110,595
○ 운용배수(A/B)*	11.0	13.3	13.4	13.7	12.6	11.1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 보증공급	113,325	111,028	150,255	249,692	225,016	194,499
○ 연금지급액	10,973	12,105	14,547	19,242	23,856	26,406
○ 연금지급잔액(C)	43,407	52,484	62,811	78,860	98,466	119,582
○ 기본재산(D)	2,889	4,524	6,495	7,844	10,205	12,764
○ 운용배수(C/D)	15.0	11.6	9.7	10.1	9.6	9.4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전세보증과 반환보증의 중복금액을 제외하고 계산

(자료: 금융위원회)

제3장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 개 요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하여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원활한 지원과 농어촌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치된 기금임.

1971년 1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정 후 1972년 2월 기금 관리주체¹⁾인 농협중앙회가 1억원을 출연하며 보증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26년도 계획안 기준 보증잔액은 18조 6,165억원임.

□ 2026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운용 규모는 2조 2,249억원으로, 금융기관 출연금(2,480억원), 보증료수입(981억원), 이자수입 등(540억원)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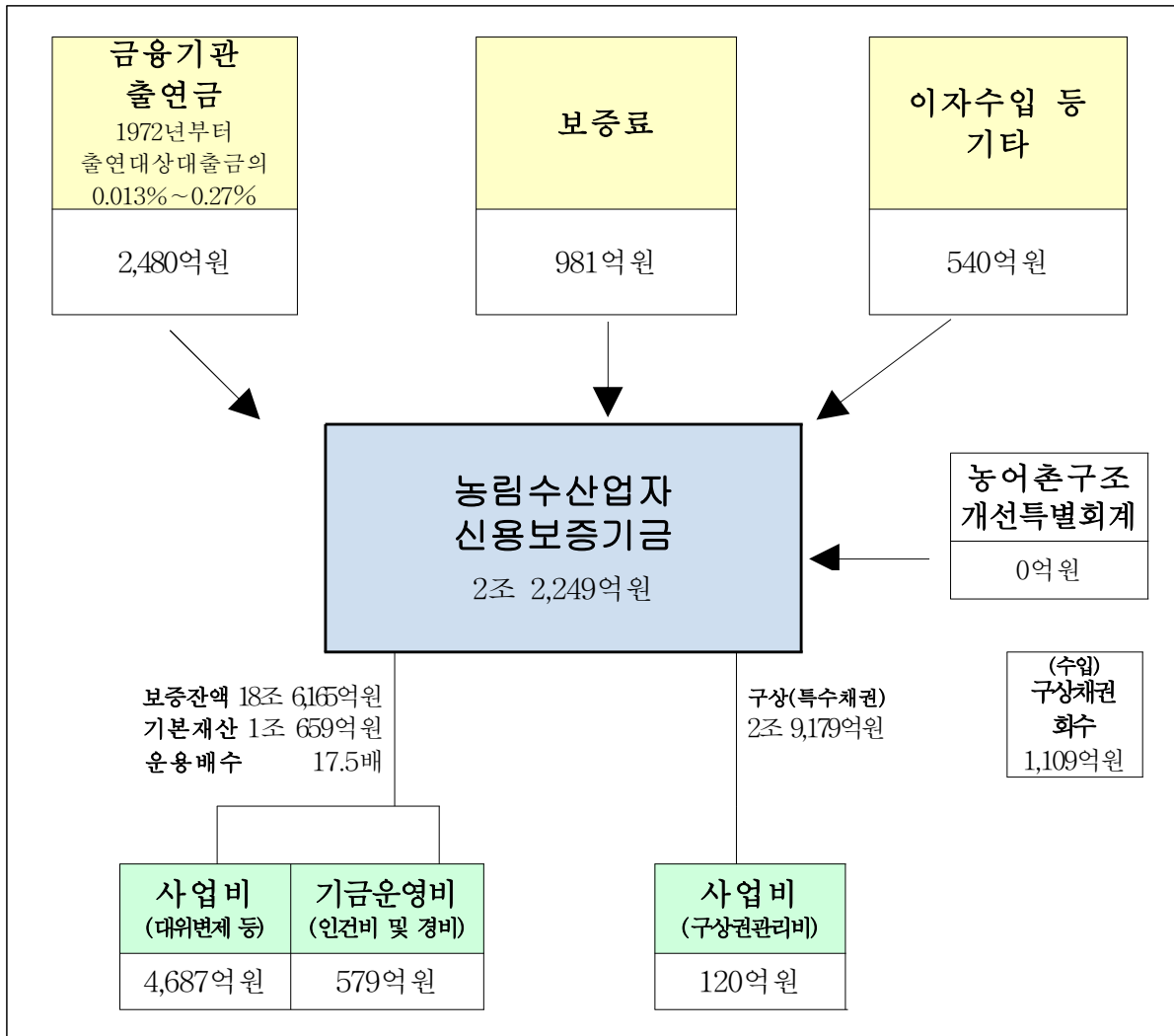
○ 이를 대위변제 등 사업비(4,807억원), 기금운영비(579억원) 등에 지출할 계획으로 있음.

1)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5조(관리기관)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신용보증에 관한 업무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취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의 회계와 그 기관의 다른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2026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요 수입·지출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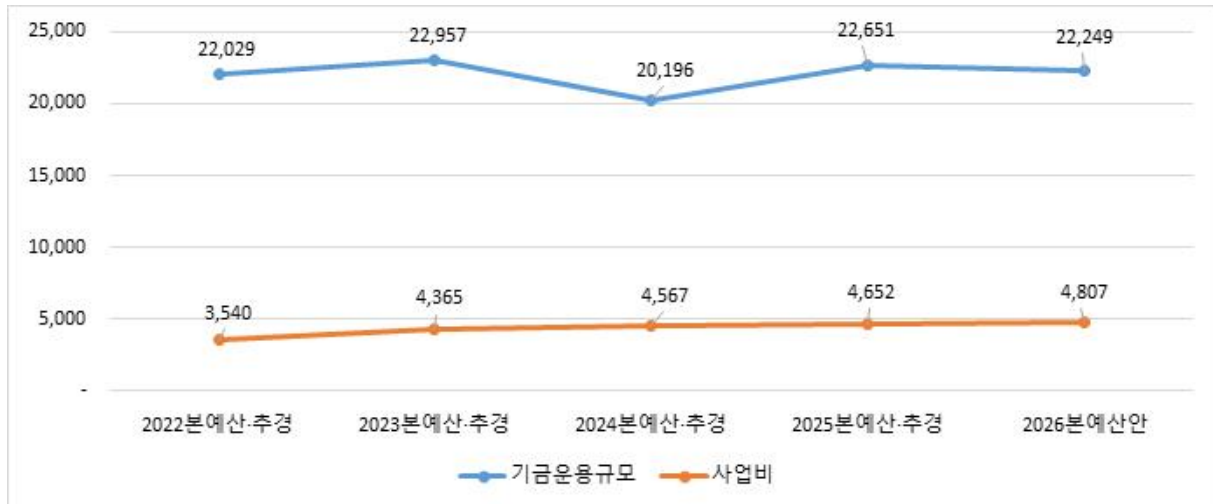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 최근 5년간 기금의 운용규모 추이를 보면 2022년 2조 2,029억원, 2023년 2조 2,957억원, 2024년 2조 196억원, 2025년 2조 2,651억원이며, 2026년도 계획안은 2조 2,249억원으로 전년대비 운영규모가 다소 감소하였음

〈최근 5년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운용규모 및 사업비 내역〉

(단위: 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1. 수입계획안

- 2026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수입계획안은 2조 2,249억 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1억 9,700만원(△1.8%)이 감액 편성됨.

〈2026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합 계	2,057,449	2,265,114	2,265,114	2,224,917	△40,197	△1.8
□ 재산수입	63,006	44,895	44,895	39,600	△5,295	△11.8
□ 경상이전수입	310,928	358,429	358,429	369,145	10,716	3.0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66,480	74,417	74,417	102,298	27,881	37.5
□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1,587,035	1,637,373	1,637,373	1,713,874	76,501	4.7%
□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30,000	150,000	150,000	-	△150,000	순감

(자료: 금융위원회)

- ‘재산수입’은 기금의 예치금, 유가증권 등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전년 대비 52억 9,500만원(△11.8%) 감소한 396억원이 편성됨.
- ‘경상이전수입’은 금융기관 출연금, 구상권 회수금 등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융기관 출연금 증가(2,480억 4,200만원), 구상채권 회수금 증가(1,108억 6,500만원)로 전년대비 107억 1,600만원(3.0%) 증가한 3,691억 4,500만원이 편성됨.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은 보증료 수입 및 수수료, 매각채권 잔여이익금 등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대비 278억

8,100만원(37.5%) 증가한 1,022억 9,800만원으로 편성됨.

-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는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등 여유자금회수에 따른 수입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6년 만기 도래하는 예치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765억 100만원(4.7%) 증가한 1조 7,138억원 7,400만원이 편성됨.
-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는 농특회계전입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원금회수 및 예탁이자 수입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농특회계 전입금 미반영되어, 0원이 편성됨.

2. 지출계획안

1) 총괄

- 2026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출계획안은 2조 2,249억 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1억 9,700만원(△1.8%)이 감액 편성됨.

〈2026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합 계	2,057,449	2,265,114	2,265,114	2,224,917	△40,197	△1.8
□ 사업비	441,509	463,959	465,190	480,707	15,517	3.3
○ 대위변제금	419,513	438,010	438,010	454,500	16,490	3.8
○ 보증료환급	5,277	5,689	5,689	7,056	1,367	24.0
○ 구상권관리비	10,912	13,884	13,884	11,974	△1,910	△13.8
○ 위탁사업비	3,302	3,754	3,754	4,555	801	21.3
○ 농신보IT유지비(정보화)	2,505	2,622	3,853	2,622	△1,231	△31.9
□ 기금운영비	54,819	57,281	57,281	57,882	601	1.0
○ 인건비	48,965	50,434	50,434	52,200	1,766	3.5
○ 기타운영비	5,854	6,847	6,847	5,682	△1,165	△17.0
□ 여유자금운용	1,561,121	1,743,874	1,742,643	1,686,328	△56,315	△3.2
○ 통화금융기관예치	1,105,198	1,713,874	1,712,643	1,656,328	△56,315	△3.3
○ 예치금융가증권매입	455,923	30,000	30,000	30,000	-	-

(자료: 금융위원회)

- 2026년도 사업비 계획안은 4,807억 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5억 1,700만원(3.3%) 증가하였으며, 기금운영비 계획안은 578억 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100만원(1.0%) 증가함.

- 여유자금운용 규모는 1조 6,863억 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63억 1,500만원(△3.2%) 감소함.

- 최근 5년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프로그램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본경비성 프로그램인 기금운영비와 여유자금운용 프로그램을 제외한 사업비는 모두 산업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음.

〈최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별 지출계획 내역〉

(단위: 억원, %)

프로그램명	2021년		2022년		2023년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산업금융지원(2400)	3,493	3,493	3,540	3,540	3,460	4,365
기금운영비(3300)	557	557	548	548	548	548
여유자금운용(9700)	16,449	16,449	17,941	17,941	18,948	18,044
합 계	20,499	20,499	22,029	22,029	22,957	22,957
프로그램명	2024년		2025년		2026년	
	당초	수정	당초	수정	계획안(B)	
산업금융지원(2400)	3,567	4,567	4,640	4,652	4,807	
기금운영비(3300)	556	556	572	572	579	
여유자금운용(9700)	16,073	15,073	17,439	17,427	16,863	
합 계	20,196	20,196	22,651	22,651	22,249	

(자료: 금융위원회)

2) 사업비

□ 2026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소관 사업비 계획안은 4,807억 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5억 1,700만원(3.3%) 증가함.

〈2026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사업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사업비	441,509	463,959	465,190	480,707	15,517	3.3
○ 대위변제금	419,513	438,010	438,010	454,500	16,490	3.8
○ 보증료환급	5,277	5,689	5,689	7,056	1,367	24.0
○ 구상권관리비	10,912	13,884	13,884	11,974	△1,910	△13.8
○ 위탁사업비	3,302	3,754	3,754	4,555	801	21.3
○ 농신보IT유지비(정보화)	2,505	2,622	3,853	2,622	△1,231	△31.9

(자료: 금융위원회)

- 2026년도 사업비 계획안의 주요 증액내역으로 ‘보증료환급’은 전년 대비 13억 6,700만원(24.0%) 증액된 70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대위변제금’은 전년 대비 164억 9,000만원(3.8%) 증액된 4,545억원으로 편성하였음.
- ‘보증료환급’은 전년 대비 13억 6,700만원(24.0%) 증액된 70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구상권관리비’는 전년 대비 19억 1,000만원(△13.8%) 감액된 119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위탁사업비’는 전년 대비 8억 100만원(△2.5%) 감액된 45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3) 기금운영비

- 2026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기금운영비 계획안은 578억 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100만원(1.0%) 증가함.

〈2026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기금운영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기금운영비	54,819	57,281	57,281	57,882	601	1.0
○ 인건비	48,965	50,434	50,434	52,200	1,766	3.5
○ 기타운영비	5,854	6,847	6,847	5,682	△1,165	△17.0
- 기금관리비	5,728	5,939	5,939	5,543	△396	△6.7
- 선급법인세	126	908	908	139	△769	△84.7

(자료: 금융위원회)

- ‘인건비’는 전년 대비 17억 6,600만원(3.5%) 증액된 522억원이 편성됨.
- ‘기금관리비’는 전년 대비 3억 9,600만원(△6.7%) 감액된 55억 4,300만원으로 편성됨.
- ‘선급법인세’는 전년 대비 7억 6,900만원(△84.7%) 감액된 1억 3,900만원으로 편성됨.

4) 여유자금운용

- 여유자금운용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총수입액 중 사업비, 기금운영비 및 정부내부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자금을 정기예금, 연기금 투자상품, 국채, 금융채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563억

1,500만원(△3.2%) 감액된 1조 6,863억 2,8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여유자금운용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여유자금운용	1,561,121	1,743,874	1,742,643	1,686,328	△56,315	△3.2%

(자료: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여유자금운용 수익률 추이〉

(단위: %)

자산별	2021	2022	2023	2024	2025.9.	2026(전망)
□ 예치금	1.09	2.05	4.24	3.86	3.30	2.60
□ 채권	△0.36	△0.32	4.75	3.72	3.23	-
□ 수익증권	0.01	△4.41	8.05	3.88	8.39	-
계	0.67	0.49	5.06	3.88	5.18	-

주: 2026년 채권 미운용 예정

(자료: 금융위원회)

3. 주요경영지표계획

□ 2026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공급액은 9조 1,270억원이며, 보증잔액은 2025년 추정 규모인 18조 1,553억원 대비 4,612억원 증가한 18조 6,165억원으로 계획하였음.

□ 2025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은 금융기관 출연금 2,480억원 등에 따라 2025년도 추정 규모인 1조 1,260억원 대비 601억원 감소한 1조 659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그 결과 운용배수는 2025년

16.1배 대비 1.4배 상승한 17.5배로 계획하였음.

〈2026년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요경영지표 계획안〉

(단위: 억원, %, 배)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보증공급	86,432	90,000	90,000	91,270	1,270	1.4
☐ 보증잔액	179,913	181,463	181,553	186,165	4,612	2.5
☐ 기본재산	10,384	10,894	11,260	10,659	△601	△5.3
☐ 운용배수	17.3	16.7	16.1	17.5	1.4	8.3

주: 2025년 9월 가결산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최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요경영지표〉

(단위: 억원, 배)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 보증공급	86,112	81,871	80,147	96,402	89,599	86,432
☐ 보증잔액	161,117	164,399	163,585	171,852	176,420	179,913
☐ 기본재산	10,449	9,847	10,792	11,741	10,476	10,384
☐ 운용배수	15.4	16.7	15.2	14.6	16.8	17.3

(자료: 금융위원회)

제4장 공적자금상환기금

1.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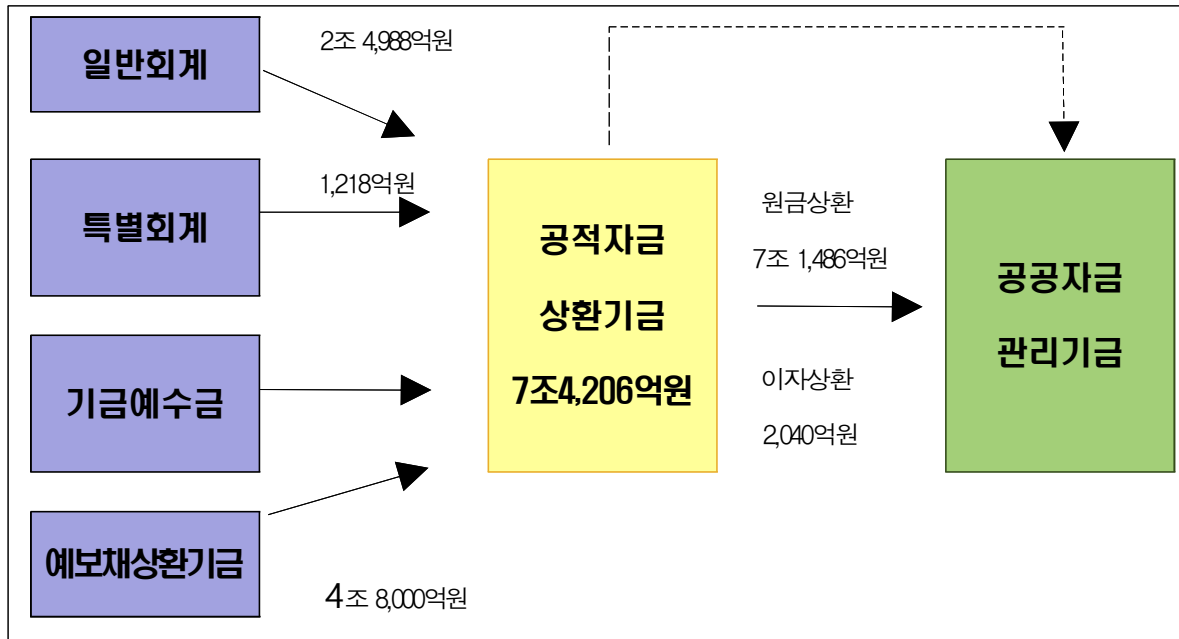
□ 정부는 2002년 말 기준 상환 부담이 있는 공적자금²⁾ 채무원금 97조원 중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28조원을 제외한 69조원에 대해 20조원은 금융회사가, 49조원은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적자금상환대책을 마련하여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공적자금상환기금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국채 발행자금을 예탁받아 2006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공적자금 중 정부 부담분인 49조원(원금 기준)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을 통해 상환하고, 매년 일반회계 출연금과 우체국예금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 출연금(예금평잔 등의 0.1%) 등으로 25년 이내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국채원리금을 상환함.

□ 2026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운용규모는 7조 4,206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전입금,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특별회계 전입금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및 예수이자상환에 지출할 계획임.

2) 공적자금(Public Funds)은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실이 누적되면서 경색된 금융시장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고, 이를 통해 급속하게 위축되던 실물경제를 회복시키고자 금융구조조정 등에 사용된 자금임(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적자금관리백서」, 2020.8.)

〈2026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주요 수입·지출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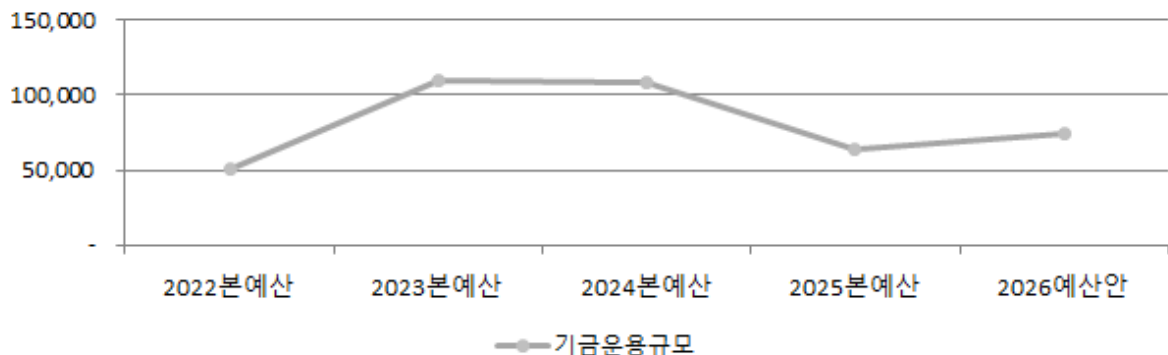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 최근 5년간 기금의 지출 계획 추이를 보면, 2022년 5조 1,370억 원에서 2023년 11조 193억 원, 2024년 10조 8,893억 원, 2025년 6조 4,384억 원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2026년도 계획안에 따른 운용규모는 7조 4,206억 원임.

〈최근 5년간 공적자금상환기금 지출 계획 추이〉

(단위: 억 원)



(자료: 금융위원회)

1. 수입계획안

- ☐ 2026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수입계획안은 7조 4,206억 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822억 1,300만원(15.3%)이 증액 편성됨.

〈2026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합 계	9,327,316	6,438,424	6,438,424	7,420,637	982,213	15.3
☐ 재산수입	934	885	885	-	△ 885	△ 100
☐ 경상이전수입	5,190,000	3,800,000	3,800,000	4,800,000	1,000,000	26.3
☐ 채고자산매각대	81,597	18,908	18,908	-	△ 18,908	△ 100
☐ 세계잉여금	-	-	-	-	-	-
☐ 일반회계전입금	2,500,000	2,500,000	2,500,000	2,498,794	△ 1,206	△ 0.1
☐ 특별회계전입금	112,873	118,631	118,631	121,843	3,212	2.7
☐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1,441,900	-	-	-	-	-
☐ 여유자금 회수	12	-	-	-	-	-

(자료: 금융위원회)

- 2026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수입계획안은 일반회계전입금 2조 4,988억 9400만원, 경상이전수입 4조 8,000억원, 특별회계전입금 1,218억 4,300만원 등으로 편성됨.

2. 지출계획안

1) 총괄

□ 2026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지출계획안은 7조 4,206억 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822억 1,300만원(△15.3%)이 증액 편성됨.

〈2026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합 계	9,327,316	6,438,424	6,438,424	7,420,637	982,213	15.3
□ 기금운영비	141	57	57	4	△53	△93.0
○ 기금관리비	2	5	5	4	△1	△20.0
○ 자산매각비	139	52	52	-	△52	△100
□ 정부내부지출	9,327,136	6,436,021	6,436,021	7,352,644	916,623	14.2
○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원금상환	8,842,338	5,997,739	5,997,739	7,148,632	1,150,893	19.2
○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이자상환	484,798	438,282	438,282	204,012	△234,270	△53.5
□ 여유자금운용	40	2,346	2,346	67,989	65,643	2,798.1
○ 통화금융기관예치	-	2,346	2,346	67,989	65,643	2,798.1
○ 한국은행예치	40	-	-	-	-	-

(자료: 금융위원회)

○ 2026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지출계획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리금 상환 7조 3,526억원, 기본경비 400만원 등으로 편성됨.

- 최근 5년간 공적자금상환기금의 프로그램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본 경비성 프로그램인 기금운영비와 내부거래·여유자금 관련 프로그램을 제외한 사업비는 모두 금융정책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음.

〈최근 공적자금상환기금 프로그램별 지출계획 내역〉

(단위: 억원)

프로그램명	2021년		2022년		2023년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금융정책(1100)	159	159	1	1	-	-
기금운영비(3500)	1	1	1	1	1	1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9100)	52,544	62,902	44,054	64,025	103,426	83,456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9200)	8,444	8,448	7,031	7,031	6,584	6,515
여유자금운용(9700)	276	276	283	283	182	182
합 계	61,424	71,785	51,370	71,341	110,193	90,153
프로그램명	2024년		2025년		2026년	
	당초	수정	당초	수정	계획안(B)	
금융정책(1100)	-	-	-	-	-	
기금운영비(3500)	1	1	0.6	0.6	0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9100)	97,894	98,409	59,977	59,977	71,486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9200)	5,498	5,498	4,383	4,383	2,040	
여유자금운용(9700)	5,500	5,500	23	23	680	
합 계	108,893	109,408	64,384	64,384	74,206	

(자료: 금융위원회)

2) 기금운영비

- 2026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기금운영비 계획안은 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300만원(△93.0%)이 감소함.

〈2026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기금운영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기금운영비	141	57	57	4	△53	△93.0
○ 기금관리비	2	5	5	4	△1	△20.0
○ 자산관리비	-	-	-	-	-	-
○ 자산매각비	139	52	52	-	△52	△100

(자료: 금융위원회)

- ‘기금관리비’는 400만원으로 2024년도 대비 100만원 감소함.

3) 정부내부지출

- 2026년도에 공적자금상환기금 정부내부지출 계획은 7조 3,526억 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166억 2,300만원(△14.2%)이 감소함.

〈2026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정부내부지출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정부내부지출	9,327,136	6,436,021	6,436,021	7,352,644	916,623	14.2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8,842,338	5,997,739	5,997,739	7,148,632	1,150,893	19.2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484,798	438,282	438,282	204,012	△234,270	△53.5

(자료: 금융위원회)

4) 여유자금운용

□ 공적자금상환기금 총수입액 중 사업비, 기금운영비 및 정부내부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자금을 정기예금 등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656억 4,300만원(2,798%) 증액된 679억 8,9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여유자금운용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여유자금운용	40	2,346	2,346	67,989	65,643	2,798.1
○ 통화금융기관예치	-	2,346	2,346	67,989	65,643	2,798.1
○ 한국은행예치금	40	-	-	-	-	-

(자료: 금융위원회)

<공적자금상환기금 여유자금운용 수익률 추이>

(단위: %)

자산별	2021	2022	2023	2024	2025.9	2026(전망)
□ 예치금	0.72	1.33	4.01	3.59	3.74	3.34
□ MMDA	0.35	0.2	-	-	-	-
계	0.71	1.33	4.01	3.59	3.74	3.34

(자료: 금융위원회)

제5장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 개 요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2년 말까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舊예금보험기금의 채무상환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음.³⁾⁴⁾ 2021년 8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공적 자금 부채(82.4조원)를 전액 상환 완료하였음.
- 2026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운용규모는 4조 8,867억 원으로 금융기관 특별기여금(2조 7,478억 원), 출자주식 매각대금(1조 8,185억 원), 배당금(1,953억 원) 및 이자수입 등(552억 원)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 이를 사업비(27억 원), 기금운영비(31억 원),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4조 8,000억 원) 등에 지출할 계획임.

3)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① 부보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200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채무로 한정한다)를 정리하기 위하여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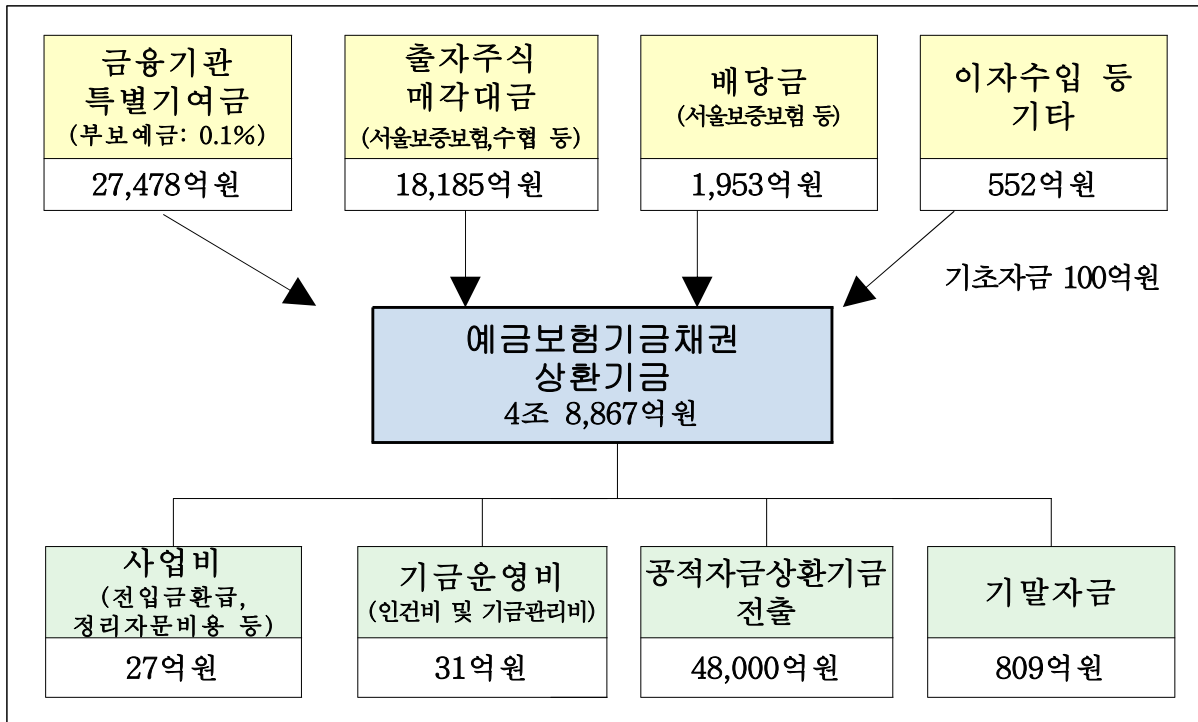
② (생략)

③ 상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예금보험기금채권(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및 상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2. 보험금, 제35조의2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액,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3.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4.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로의 전출
5.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체결되는 정산약정에 따른 출연금의 반환

4) 現 예금보험기금은 2003.1.1. 이후 예금자 보호 업무 등을 위하여 신규로 운영한 것임. 예금보험공사의 운영경비는 예금보험기금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업무량에 따라 배분하고 있으며,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지속적인 공적자금 회수에 따른 업무량 감소에 따라 현재 예금보험공사 전체 운영경비의 3% 미만을 부담하고 있음.

〈2026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요 수입·지출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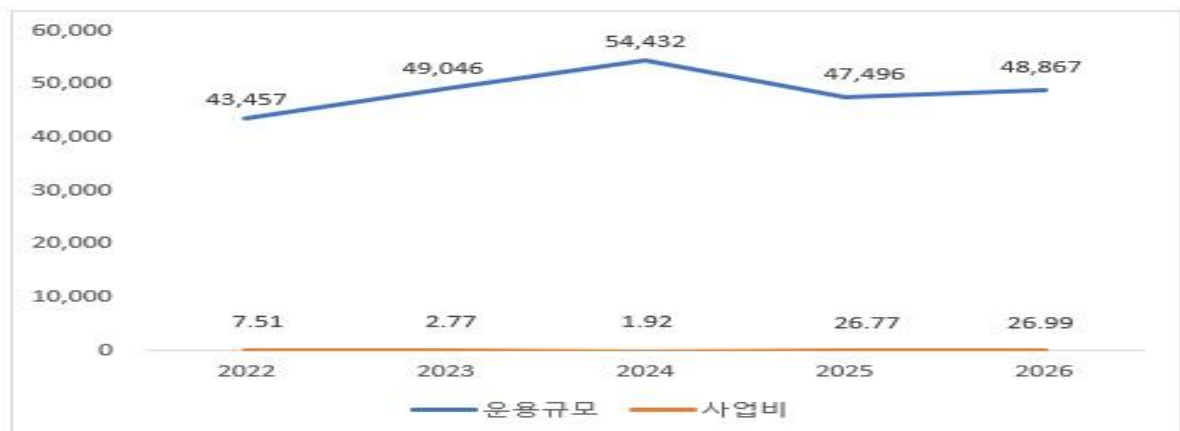


(자료: 예금보험공사)

□ 최근 5년간 기금의 운용규모 추이를 보면 2022년 4.3조원, 2023년 4.9조원, 2024년 5.4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 4.7조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26년 4.9조원으로 다시 증액 편성 계획임.

〈최근 5년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운용규모 및 사업비 내역〉

(단위: 억원)



(자료: 예금보험공사)

1. 수입계획안

□ 2026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수입계획안은 4조 8,867억원으로 전년 대비 1,371억원(2.9%)이 증액 편성됨.

〈2026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합 계	5,443,234	4,749,605	4,749,605	4,886,680	137,075	2.9
□ 재산수입	345,214	344,855	344,855	310,347	△34,508	△10.0
□ 경상이전수입	2,580,600	2,660,038	2,660,038	2,747,819	87,781	3.3
□ 관유물매각대	216,626	525,330	525,330	1,818,514	1,293,184	246.2
□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2,300,794	1,219,382	1,219,382	10,000	△1,209,382	△99.2

(자료: 예금보험공사)

- ‘재산수입’은 출자금융기관 주식 배당금, KR&C(정리금융회사) 대출금 이자수입 및 기금의 대기성 자금 운용수익 등으로, 대기성 자금 운용 수익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345억 800만원(△10.0%) 감소한 3,103억 4,700만원이 편성됨.
- ‘경상이전수입’은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른 금융권 특별기여금 수입 등으로, 최근 특별기여금 수납액 추세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877억 8,100만원(3.3%) 증가한 2조 7,478억 1,900만원이 편성됨.
- ‘관유물매각대’는 출자금융회사 주식 매각수입으로 서울보증보험 등 보유지분 매각계획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조 2,931억 8,400만원 (246.2%) 증가한 1조 8,185억 1,400만원이 편성됨.
- ‘차입금 및 여유자금 회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발행 및 기초 보유자금으로 2026년에는 기초 보유자금만 존재하며,
전년 대비 1조2,093억 8,200만원(△99.2%) 감소한 100억원이 편성됨.

2. 지출계획안

1) 총괄

□ 2026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지출계획안은 4조 8,867억원으로
전년 대비 1,371억원(2.9%)이 증액 편성됨.

〈2026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합 계	5,443,234	4,749,605	4,749,605	4,886,680	137,075	2.9
□ 사업비	192	2,677	2,677	2,699	22	0.8
○ 전입금환급	-	3	3	2	△1	△33.3
○ 소송및법적절차비	-	7	7	5	△2	△28.6
○ 기타정리자문경비등	192	2,667	2,667	2,692	25	0.9
□ 기금운영비	3,028	3,103	3,103	3,117	14	0.5
○ 인건비	2,771	2,844	2,844	2,542	△302	△10.6
○ 기금관리비	257	259	259	575	316	122.0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5,190,000	3,800,000	3,800,000	4,800,000	1,000,000	26.3
□ 채권 원리금 상환	-	-	-	-	-	-
○ 채권 원금 상환	-	-	-	-	-	-
○ 채권 이자 상환	-	-	-	-	-	-
□ 여유자금운용	250,013	943,825	943,825	80,864	△862,961	△91.4

(자료: 예금보험공사)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사업비 계획안은 26억 9,900만원으로
출자주식 매각 관련 기타정리자문경비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200만원(0.8%) 증액되었으며, 기금운영비 계획안은 31억 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00만원(0.5%) 증가함.

○ 2026년도 기금의 여유자금은 808억 6,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629억 6,100만원(△91.4%) 감소함.

□ 최근 5년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프로그램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비 성격의 금융정책(1100), 경상비용 성격의 기금운영비(3500), 기말자금인 여유자금운용(9700),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8901)로 구성됨.

〈최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프로그램별 지출계획 내역〉

(단위: 억원, %)

프로그램명	2021년		2022년		2023년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금융정책(1100)	1,059	1,059	808	808	879	879
기금운영비(3500)	36	36	36	40	34	34
여유자금운용(9700)	134	134	7,126	7,123	7,716	7,716
차입금등원금상환(9800)	16,800	16,800	-	-	-	-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8901)	12,500	12,500	24,000	24,000	26,000	26,000
합 계	30,529	30,529	31,970	31,970	34,630	34,630
프로그램명	2024년		2025년		2026년 계획안	
	당초	수정	당초	수정		
금융정책(1100)	37	37	27	27	27	
기금운영비(3500)	35	35	31	31	31	
여유자금운용(9700)	3,839	3,839	9,438	9,438	809	
차입금등원금상환(9800)	-	-	-	-	-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8901)	42,500	42,500	38,000	38,000	48,000	
합 계	46,410	46,410	47,496	47,496	48,867	

(자료: 예금보험공사)

2) 사업비

- 2026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소관 사업비 계획안은 26억 9,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00만원(0.8%) 증가함.

〈2026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사업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사업비	192	2,677	2,677	2,699	22	0.8
○ 전입금환급	-	3	3	2	△1	△33.3
○ 소송및법적절차비	-	7	7	5	△2	△28.6
○ 기타정리자문경비등	192	2,667	2,667	2,692	25	0.9

(자료: 예금보험공사)

- ‘전입금환급’ 사업은 금융구조조정 지원자금 관련 사후정산비용으로 전년 대비 100만원(△33.3%) 감소한 200만원이 편성됨.
- ‘소송 및 법적절차비’ 사업은 종결재단 관련된 소송비용 등으로 전년 대비 200만원(△28.6%) 감소한 500만원이 편성됨.
- ‘기타정리자문경비등’ 사업은 서울보증보험 등 보유지분 매각계획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500만원(0.9%) 증가한 26억 9,200만원이 편성됨.

3) 기금운영비

- 2026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기금운영비 계획안은 31억 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00만원(0.5%) 증가함.

〈2026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기금운영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기금운영비	3,028	3,103	3,103	3,117	14	0.5
○ 인건비	2,771	2,844	2,844	2,542	△302	△10.6
○ 기금관리비	257	259	259	575	316	122.0

(자료: 예금보험공사)

- ‘인건비’는 기금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전담인력의 인건비 부담액으로, 전년 대비 3억 200만원(△10.6%) 감소한 25억 4,200만원이 편성됨.
- ‘기금관리비’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관리에 소요되는 각종 경상적인 경비로, 전년 대비 3억 1,600만원(122.0%) 증가한 5억 7,500만원이 편성됨.

4)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부채 상환 완료 이후 매년 공적자금 상환기금으로 여유자금을 전출하고 있으며 자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1조원(26.3%) 증가한 4조 8,000억원이 편성됨.

〈2026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5,190,000	3,800,000	3,800,000	4,800,000	1,000,000	26.3

(자료: 예금보험공사)

5) 채권 원리금 상환

☐ 2026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채권 원리금 상환은 없음.

- 2021년 중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부채 상환이 완료됨에 따라 이후 채권 및 이자 상환금액이 발생하지 않음.

6) 여유자금운용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여유자금운용규모는 기말보유자금으로 전년 대비 8,629억 6,100만원(△91.4%) 감소한 808억 6,4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여유자금운용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여유자금운용	250,013	943,825	943,825	80,864	△862,961	△91.4

(자료: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여유자금운용 수익률 추이〉

(단위: %)

자산별	2021	2022	2023	2024	2025.9	2026(전망)
☐ 예치금	0.95	2.45	4.05	3.67	-	-
☐ 채권	0.65	2.28	3.80	3.67	-	-
☐ 수익증권(MMF)	0.82	2.32	3.92	-	-	-
☐ 수익증권(국공채형)	-	-	5.02	-	-	-
☐ 수익증권(완전위탁)	-	-	-	3.81	2.93	2.41
계	0.94	2.40	4.12	3.78	2.93	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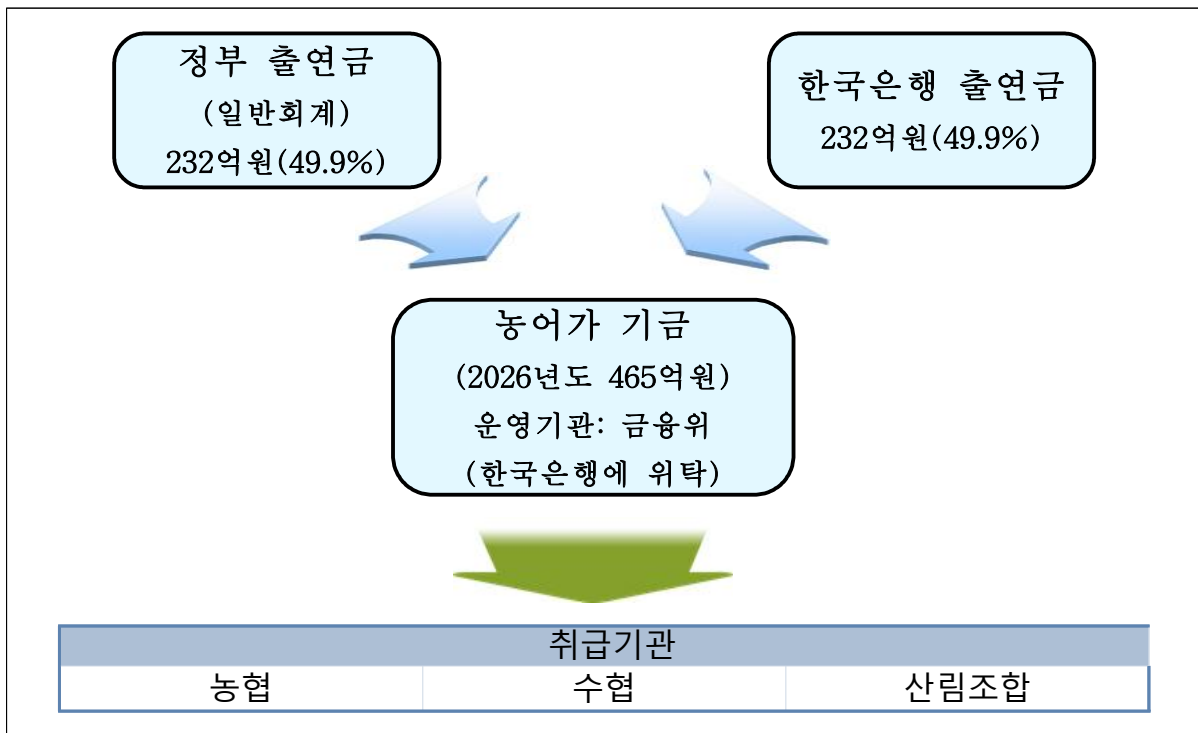
(자료: 예금보험공사)

제6장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1. 개 요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농어민 재산형성 지원, 저축장려를 통한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1985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설치되었음.
- 2026년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운용 규모는 465억 900만원으로, 정부 출연금(232억원)과 한국은행 출연금(232억원)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기본금리 외에 법정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금(465억원) 사업에 집행할 계획임.

〈2025년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주요 수입·지출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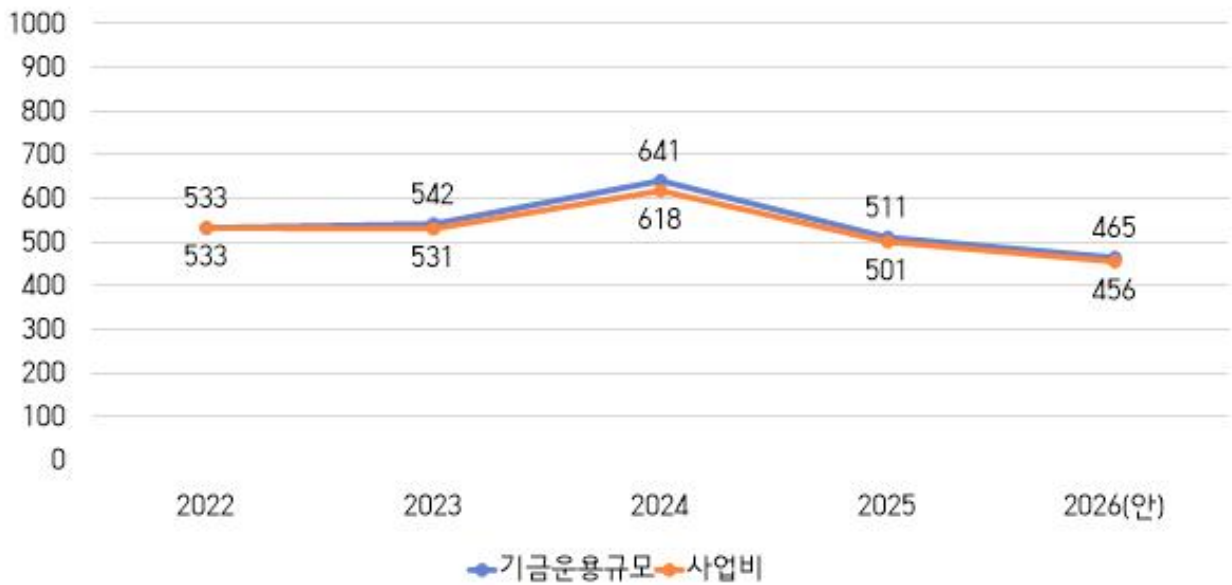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 최근 5년간 기금의 운용규모 추이를 보면 2022년 533억원, 2023년 542억원, 2024년 641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25년 511억원, 2026년도 계획안은 465억원으로 다시 감소하였음.

〈최근 5년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운용규모 및 사업비 내역〉

(단위: 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1. 수입계획안

- 2026년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수입계획안은 465억 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7,100만원($\Delta 5.4\%$)이 감액 편성됨.

〈2026년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합 계	63,107	51,095	49,180	46,509	$\Delta 2,671$	$\Delta 5.4$
□ 재산수입	118	284	208	122	$\Delta 86$	$\Delta 41.4$
□ 경상이전수입	31,463	24,147	24,147	23,192	$\Delta 955$	$\Delta 3.9$
□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63	2,517	678	3	$\Delta 675$	$\Delta 99.6$
□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31,463	24,147	24,147	23,192	$\Delta 955$	$\Delta 3.9$

(자료: 금융위원회)

- ‘재산수입’은 기금 여유자금 운용을 통한 이자 수입액으로서, 전년 대비 8,600만원($\Delta 41.4\%$)이 감액 편성됨
- ‘경상이전수입’은 한국은행 출연금으로 구성되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그 잉여금 및 적립금에서 출연하며,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는 정부출연금으로서 동법 동조 제3항에 따라 저축장려금으로 필요한 금액의 1/2이상을 출연함. 2026년도 각각 전년 대비 9억 5,500만원 감소한 231억 9,200만원이 편성됨.
-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는 2025년도말 현재 금융기관에 운용중인 기금 여유자금 잔액으로서 2026년도 수입계획안은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7,500만원 감액 편성됨.

2. 지출계획안

1) 총괄

- ☐ 2026년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지출계획안은 465억 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7,100만원(△5.4%)이 감액 편성됨.

〈2026년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합 계	63,107	51,095	49,180	46,509	△2,671	△5.4
☐ 사업비	62,429	50,086	48,207	45,594	△2,613	△5.4
○ 저축장려금	62,429	50,086	48,207	45,594	△2,613	△5.4
☐ 기금운영비	-	1	-	-	-	-
○ 기금관리비	-	1	-	-	-	-
☐ 여유자금운용	678	1,008	973	915	△58	△5.9
○ 한국은행예치	8	9	3	5	△2	△66.7
○ 통화금융기관예치	670	999	970	910	△60	△6.2

(자료: 금융위원회)

- 2026년도 사업비 계획안은 455억 9,400만원으로 2025년도 계획 대비 26억 1,300만원(△5.4%) 감소하였으며, 기금운영비 계획안은 출장 및 성과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100만원 감액되었음.
- 2026년도 기금의 여유자금운용 계획안은 9억 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800만원(△5.9%) 감액됨.

- ☐ 최근 5년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프로그램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본경비성 프로그램인 기금운영비와 여유자금운용 프로그램을 제외한 사업비는 모두 저축장려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음.

〈최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프로그램별 지출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명	2021년		2022년		2023년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저축장려(1600)	67,079	68,233	54,628	54,628	53,082	53,082
기금운영비(3200)	1	-	1	1	1	1
여유자금운용(9700)	1,346	7	1,088	1,088	1,070	1,070
합 계	68,426	68,240	55,717	55,717	54,153	54,153
프로그램명	2024년		2025년		2026년	
	당초	수정	당초	수정	계획안(B)	
저축장려(1600)	61,806	60,614	50,086	48,207	45,594	
기금운영비(3200)	1	-	1	-	-	
여유자금운용(9700)	2,302	2,517	1,008	973	915	
합 계	64,109	63,131	51,095	49,180	46,509	

(자료: 금융위원회)

2) 사업비

□ 2026년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사업비 계획안은 455억 9,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1,300만원(△5.4%) 감액됨.

〈2026년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사업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사업비	62,429	50,086	48,207	45,594	△2,613	△5.4
○ 저축장려금	62,429	50,086	48,207	45,594	△2,613	△5.4

(자료: 금융위원회)

3) 여유자금운용

□ 자금의 유입시기 및 지급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여유

자금에 대한 운용 규모는 2026년에 9억 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800만원(△5.9%) 감액 편성됨.

〈2026년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여유자금운용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 여유자금운용	678	1,008	973	915	△58	△5.9

(자료: 금융위원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여유자금운용 수익률 추이〉

(단위: %)

자산별	2021	2022	2023	2024	2025.10
☐ 예치금	0.71	1.73	3.69	3.46	2.6
☐ 채권	-	-	-	-	-
☐ 수익증권	-	-	-	-	-
계	0.71	1.73	3.69	3.46	2.6

(자료: 금융위원회)

IV.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붙임> 참조

(수석전문위원 : 정명호, 전문위원 : 최기도)

V. 대체토론의 요지

1. 국가보훈부 소관

- (보훈기금) 고독사 위험군 발굴 전수 조사 관련 예산 증액은 바람직하나, 기존의 수발신 등과 관련된 5억 5,200만원은 실효성 없음.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고 환수 부진

2. 금융위원회 소관

- 해당없음

VI.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이정문 위원장)

1. 국가보훈부 소관

○ 국가보훈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 보훈기금 지출의 경우 히어로즈패밀리프로그램 예산을 1억 4,000만원 감액하고,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위해 골프장 시설투자 사업을 60억원 증액하는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111억 4,300만원을 증액하고,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수입의 경우 친일귀속재산의 적극적 토지매각 진행을 위해 1억원 증액하고,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지출의 경우 극빈층 (손)자녀생활지원금 수급자에 대한 생계지원을 위해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사업 예산을 44억 6,300만원 증액하는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51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2. 금융위원회 소관

○ 다음,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 신용보증기금 수입의 경우 유동화증권 직접 발행을 위하여 기타유가증권 매각대 및 기타재산이자수입 예산 7,579억 7,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신용보증기금 지출의 경우, 2025년 예상 공급규모를 고려하여 대환보증대위변제사업 예산 76억원을 감액하는 등 2개 세부사업에 대

하여 106억원을 감액하였고, 유동화증권 직접 발행을 위하여 유동화증권 직접발행 사업을 신설하고 예산 7,580억 1,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기금의 건정성을 감안하여 기타특별회계전입금 예산 1,500억원을 증액하였고,
-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경우,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VII. 찬반토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VIII. 심사결과

1. 국가보훈부 소관

가. 보훈기금

1) 보훈기금 수입 : 원안의결

2) 보훈기금 지출 : 수정의결

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1)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수입 : 수정의결

2)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지출 : 수정의결

2. 금융위원회 소관

가. 신용보증기금 수입지출 : 수정의결

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수입지출 : 원안의결

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수입지출 : 원안의결

라. 공적자금상환기금 수입지출 : 원안의결

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수입지출 : 원안의결

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수입지출 : 원안의결

IX. 소수의견의요지

- 해당사항 없음

X. 부대의견

1. 국가보훈부 소관

- 국가보훈부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88골프장 매각 여부를 조속히 확정하고, 그에 따라 기금운용 수입 계획을 현실화한다.
- 국가보훈부는 히어로즈패밀리프로그램을 용역 수행업체에 전담시키는 사업 추진 방식을 지양하고, 국가보훈부가 사업 총괄 및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여 운영한다.
- 국가보훈부는 소수 대상자에 한정된 일회성 행사 중심 운영을 지양

하고, 전문 상담프로그램 강화 등 보다 전문적인 정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한다.

- 국가보훈부는 현재 고독사 예방 사업 내용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재검토하여 제대로 된 예방대책을 마련한다.
- 국가보훈부는 토지매각대의 수입 계획액 계상 시 최근 3개년 평균 수납액을 목표로 설정하도록 노력한다.

2. 금융위원회 소관

- 신용보증기금은 이사장이 해외 출장 시 과도한 숙박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이사장의 경우에도 임직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숙박비 특례 규정에 상한선을 마련한다.
- 금융위원회는 기금 청산기한(2027년말)까지의 부채 상환 가능 규모를 명확히 하고, 기금 연장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 개정 등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

※ 첨부 : 2026년도 정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 조정내역

【 첨부 】

**2026년도 정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조정내역**

2025. 11

I. 정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총괄표

1.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결과

(1) 수입

(단위 : 백만원)

위원회명	소 관	기 금	수정의결		
			증 액	감 액	증 감
정무위원회	국가보훈부	보훈기금	-	-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100	-	100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761,014	-	761,014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50,000	-	150,000
		공적자금상환기금	-	-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	-
	합 계		911,114		911,114

(2) 지출

(단위 : 백만원)

위원회명	소 관	기 금	수정의결		
			증 액	감 액	증 감
정무위원회	국가보훈부	보훈기금	11,143	△140	11,003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5,190	-	5,190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758,014	△10,600	747,414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	-
		공적자금상환기금	-	-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	-
	합 계		774,347	10,740	763,607

II. 정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가. 국가보훈부

1. 보훈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1) 수입 - 조정내역 없음

(2) 지출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1	히어로즈패밀리 프로그램 (2160-473)	875	875	1,015	875	△140	○ 동 사업은 중복성이 크고 일회성 행사 예산으로 3억 3,500만원을 편성한 것은 과다하므로, 1억 4,000만원 감액	
2	고령독거유공자 AI기반 안부확인서비스 (2160-476)	-	-	552	1,887	1,335	○ 동 사업은 1인 가구 유공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 전수조사를 위하여 13억 3,5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3	보훈복지시설 건립 (2161-443)	3,783	3,783	6,031	7,931	1,800	○ 동 사업은 남부권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및 보훈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남부권(경남도 내) 보훈휴양원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 예산 18억원 증액	
						100	○ 동 사업은 경상북도 포항시에 ‘경북 동해안권 국립보훈 요양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입지선정 및 타당성 용역 예산 1억원 증액	
4	보훈요양 및 양로지원 (2161-444)	8,372	7,818	8,623	9,623	1,000	○ 동 사업은 보훈복지타운(상가동) 내진 보강을 위해 10억원 증액	
5	골프장 시설투자 (2362-435)	4,077	4,077	4,027	10,027	4,000	○ 동 사업은 노후화된 직원식당 재건축 및 기숙사 건립을 위해 40억원 증액	
						2,000	○ 동 사업은 캐디(보조원) 생활공간을 지상으로 이전하기 위해 20억원 증액	
6	참전기념 사업지원 (4161-439)	687	687	845	1,753	908	○ 내역사업인 ‘공법단체 주관 참전기념사업’(5억 9,700만원, 전년 대비 1억 7,100만원 증액)은 ‘재향군인회 참전기념사업’ 추가 지원을 위해 9억 800만원 증액	

2.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1) 수입

연번	목명 (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1	변상금 (57-571)	39	-	58	158	100	○ 적극적인 변상금 부과로 순애기금 재원부족분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1억원 증액	

(2) 지출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1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 (3141-401)	96,997	-	98,097	102,560	4,463	○ 내역사업인 ‘(손)자녀생활지원금’사업(929억 8,100만원, 전년 대비 11억 300만원 증액)은 저소득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생계가 가장 어려운 극빈층에 대한 특별부가금을 신설하여 생활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44억 6,3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2	독립유공자 묘소관리 (3141-403)	398	-	398	710	312	○ 동 사업은 독립유공자의 묘소 관리 희망 기수에 비해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어려우므로, 수요 대비 현실적 예산 반영을 위해 3억 1,200만원 증액	
3	광복회관 관리 (3141-407)	3,027	3,036	3,112	3,527	415	○ 동 사업은 광복회관 토지 임차료 시세 반영을 위해 토지 임차료 4억 1,500만원 증액	

3. 기타 특이사항(사업명 또는 비목 변경 등) - 없음

나. 금융위원회

1.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1) 수입

(단위: 백만원)

연번	목명 (000-00)	2024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 이유	비고
		당초	수정					
1	기타유가증권 매각대 (84-843)	423,939	423,939	379,997	1,129,997	750,000	○ 2025년 4월 개정(2025. 10. 시행)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관련 수입 항목이 편성되지 않음. ※ 신용보증기금은 2026년 전체 유동화회사보증 신규 공급 계획액 2.8조원 중 7,500억원을 직접 발행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 ○ 2026년부터 신용보증기금이 적절하게 유동화증권 직접 발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수입 내역 반영	

연번	목명 (000-00)	2024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2	기타재산이자 수입 (54-546)	177,514	177,514	109,185	117,159	7,974	○ 2025년 4월 개정(2025. 10. 시행)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관련 수입 항목이 편성되지 않음. ※ 신용보증기금은 2026년 전체 유동화회사보증 신규 공급 계획액 2.8조원 중 7,500억원을 직접 발행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 ○ 2026년부터 신용보증기금이 적절하게 유동화증권 직접 발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수입 내역 반영	

(2) 지출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1	유동화증권 직접발행 (신규)	-	-	-	758,014	758,014	○ 2025년 4월 개정(2025. 10. 시행)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관련 지출 항목이 편성되지 않음. ※ 신용보증기금은 2026년 전체 유동화회사보증 신규 공급 계획액 2.8조원 중 7,500억원을 직접 발행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 ○ 2026년부터 신용보증기금이 적절하게 유동화증권 직접 발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출 내역 반영	
2	업무용건물 (2431-305)	14,294	14,294	22,533	19,533	△3,000	○ 동사업은 신용보증기금 점포 이전 등을 위해 업무용 건물을 취득하거나, 노후화된 업무용 건물에 대하여 대수선 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임. ○ 신용보증기금 대구지점 건물 대수선 공사를 위해 4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중 공사비 30억원의 경우 2026년도 내에 집행가능성이 없고, 다음연도 이월도 불가능하여 불용이 예상되므로 감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3	위기대응특례 보증 대위변제 (신규) (2431-319)	-	-	18,298	10,698	△7,600	○ 동사업은 위기보증특례보증 공급 이후 주채무자(기업)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사업임. ○ 2025년도에 위기대응특례보증 프로그램에서 당초 계획한 3조원을 전액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대위변제액을 산출하여 편성하였으나, 월별 공급실적을 감안할 때 2025년 예상 공급규모는 1.5조원 규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대위변제 예상액을 2025년 예상 공급규모 1.5조원을 기준으로 재산출한 결과에 따라 계획액 대비 76억원을 감액	

2.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1) 수입

연번	목명 (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1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91-912)	150,000	150,000	-	150,000	150,000	○ 동 사업은 농어업인의 보증 지원에 필요한 기본재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이하 “농특회계”)에서 기금으로 재원을 출연하는 것임. ○ 농신보 운용배수가 지속적으로 적정 수준(12.5배)을 초과하여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6년도 기타특별회계전입금은 전액 감액되어 수입계획안에 미반영되어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므로, 기타특별회계전입금 1,500억원 증액	

(2) 지출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특이사항(사업명 또는 비목 변경 등) - 없음

Ⅲ. 부대의견

1. 국가보훈부 소관

- 국가보훈부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88골프장 매각 여부를 조속히 확정하고, 그에 따라 기금운용 수입 계획을 현실화한다.
- 국가보훈부는 히어로즈패밀리프로그램을 용역 수행업체에 전담시키는 사업 추진 방식을 지양하고, 국가보훈부가 사업 총괄 및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여 운영한다.
- 국가보훈부는 소수 대상자에 한정된 일회성 행사 중심 운영을 지양하고, 전문 상담프로그램 강화 등 보다 전문적인 정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한다.
- 국가보훈부는 현재 고독사 예방 사업 내용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재검토하여 제대로 된 예방대책을 마련한다.
- 국가보훈부는 토지매각대의 수입 계획액 계상 시 최근 3개년 평균 수납액을 목표로 설정하도록 노력한다.

2. 금융위원회 소관

- 신용보증기금은 이사장이 해외 출장 시 과도한 숙박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이사장의 경우에도 임직원과의 형

평성 등을 고려하여 숙박비 특례 규정에 상한선을 마련한다.

- 금융위원회는 기금 청산기한(2027년말)까지의 부채 상환 가능 규모를 명확히 하고, 기금 연장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 개정 등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

【 불 임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2025. 11.

【 국가보훈부 소관 】

1.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⁵⁾

1)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은 제복군무 중 전몰·순직한 군인, 경찰, 소방관 등의 유가족이 가족상실의 아픔을 극복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억 4,000만원(16.0%) 증가한 10억 1,5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사업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A)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602	875	1,015	140	16.0

(자료: 국가보훈부)

- 동 사업은 전몰·순직군경 유족 중 24세 이하 자녀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심리·정서적 지원을 통해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부터 시작되어 (‘24) 6억 1,700만원 → (‘25) 8억 7,500만원 → (‘26안) 10억 1,500만원으로 사업을 확대해 오고 있음.

5) 세부사업: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2160-473)

- 세부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국내 힐링캠프 2억 3,000만원, 국제 교류캠프 3억 3,500만원, 멘토링 활동 지원 3억원, 소통채널 운영 및 기타 행사에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2026년도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산출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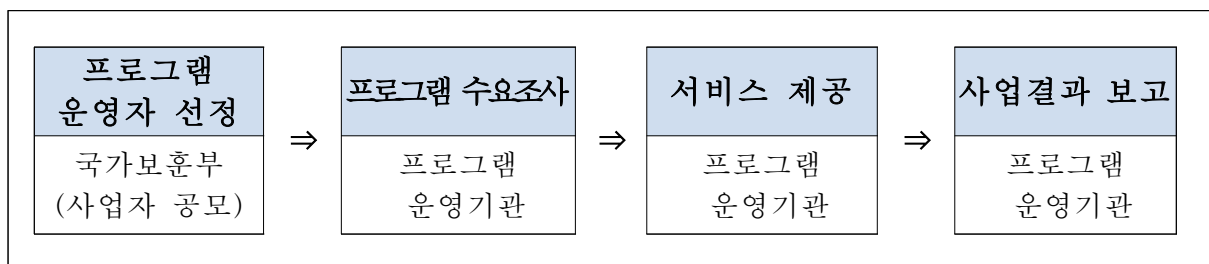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안	산출근거
히어로즈 패밀리 네트워크 구축	국내 프로그램 및 소통채널 운영	380	-힐링캠프 등 230 -이벤트 100 -소통채널 운영·관리·홍보 50
	히어로즈 패밀리 자녀 국제 교류캠프 운영	335	-자녀 등 25명×13.4
히어로즈 패밀리 멘토링 및 정서지원	멘토링 활동 및 상담·컨설팅 지원	300	-멘토링 운영관리 50 -멘토링 활동 및 상담·컨설팅 지원 250 (100명×625천원×4회)
합계		1,015	

(자료: 국가보훈부)

- 사업 집행절차를 살펴보면, 국가보훈부는 프로그램 운영자 선정만을 담당하고, 전체 프로그램 운영과 관리는 사업자가 수행하는 구조로, 연초에 민간사업을 대행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사업 집행절차〉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1) 국가보훈부의 관리·운영 책임 강화 필요

- 국가보훈부는 2024년에는 연간사업 대행용역 1건과 국제교류캠프 용역 1건을 각각 계약 체결하였고, 2025년에는 네트워킹, 국제교류캠프, 멘토링 등을 포함한 연간사업을 과업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함.

〈2024년~2025년 프로그램 운영 용역 계약 현황〉

구분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기준)	수탁기관	계약 기간	계약 유형	수의계약 사유
2024년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대행 용역	329백만원	(주)위드바톤	2024.3. ~12.	일반경쟁 (협상에의한계약)	-
	히어로즈 키즈 특사 파견 (국제교류캠프)	245백만원	티앤코리아(주)	2024.3. ~12.	일반경쟁→ 수의 (협상에의한계약)	국가계약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2025년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운영 대행용역	825백만원	(주)위드바톤	2025.3. ~12.	일반경쟁→ 수의 (협상에의한계약)	국가계약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자료: 국가보훈부)

-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일반용역비(210-14목)은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구매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이므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홍보물 제작 등을 대행시키되, 각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총괄, 공식 소통채널인 누리집 관리, 멘토 모집 관리, 성과 점검 등은 국가보훈부에서 직접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프로그램 안내 및 의견 접수 등을 담당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전담 사무국을 용역 대행사의 전담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어, 매년 용역 계약을 체결하므로 업체가 변경될 경우 사업 운영의 연속성이 저하됨.
- 소통채널 누리집⁶⁾ 운영도 업체에 맡김으로써 관리가 원활히 되지 않고 있는데, 프로그램 신청 등을 위해서는 회원 가입이 필요함에도 가입자 수는 2025년 10월 기준 대상 인원의 14%인 70명에 불과함.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대상자 대비 소통채널 가입자 수〉

구분	2024년 말		2025년 10월	
	가구수	인원수	가구수	인원수
프로그램 대상자 수*	231가구	586명	195가구	498명
소통채널 가입자 현황	61가구	67명	64가구	70명

* 전몰순직군경 유족 중 24세 이하 자녀와 그 보호자

(자료: 국가보훈부)

- 멘토링의 경우 1:1 청년멘토 멘토링⁷⁾을 운영하여 소정의 활동비와 봉사활동 시간 부여로 청년 멘토를 모집하고 있으나, 일정 협의 등의 사유로 중간에 멘토링이 중단되거나 멘토가 교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서적으로 민감한 참여자 특성을 고려하면 멘토의 자격 검증이 충분히 될 필요가 있음.

6) <http://heroesfamily.ninetysoft.com/>

7) 멘토링은 명예멘토 클래스와 청년 멘토 1:1 멘토링이 있고, 청년 멘토링은 2024년 20명, 2025년 19명이 참여함.

- 국가보훈부는 용역 수행업체에 전담시키는 사업 추진 방식을 지양하고, 국가보훈부가 사업 총괄 및 관리, 감독을 보다 강화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일회성 프로그램 지양 필요

- 프로그램을 내용을 살펴보면, 정서적 지원이라는 사업 목표에도 불구하고 전문 상담 프로그램 운영이 아닌 힐링캠프, 국제교류 캠프와 같이 소수의 인원에 대한 일회성 행사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 2026년 예산안의 증액(1억 4,000만원) 내용도 힐링캠프(7,000만원), 국제교류 캠프(5,000만원) 확대를 위한 것으로, 근본적인 심리·정서 지원 강화로 보기에 부족함.
- 국내외 여행·체험을 통해 얻는 심리적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행사 대행 업체를 통한 교류 프로그램 외에도 전문기관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복 참여자가 많다는 점에서 참여 의지가 있는 유가족만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행사 외에도 교류 프로그램에 소극적인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심리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행사별 참여자(중복자) 수〉

구분	힐링캠프	국제 교류캠프	멘토링	이벤트	계
24년	57명(49명)	16명(10명)	82명(70명)	146명(135명)	301명(264명)
25년	49명(41명)	20명(9명)	122명(112명)	182명(172명)	373명(334명)

* 괄호 안의 인원은 프로그램 간 중복 참여 인원임.

(자료: 국가보훈부)

- ☐ 국가보훈부는 소수 대상자에 한정된 행사 중심 운영을 지양하고, 전문 상담 프로그램 강화 등 보다 전문적인 정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고령독거유공자 AI기반 안부확인서비스⁸⁾

1)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고령독거유공자 AI기반 안부확인서비스’는 고령 독거유공자 대상 AI 기반 통합안부확인서비스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 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⁹⁾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6년 계획안은 5억 5,200만원이 신규 편성됨.

〈2026년도 고령독거유공자 AI기반 안부확인서비스 사업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A)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고령독거유공자 AI기반 안부확인서비스	-	-	552	552	순증

(자료: 국가보훈부)

□ 동 사업은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하면서, 일반국민 대비 높은 1인 거주 비율, 전쟁 트라우마 등 고독사에 취약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고독사 예방대책이 필요하게 되어, 일반국민 대상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예방 사업과 별개로 국가유공자 대상 국가보훈부 중심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8) 세부사업: 고령독거유공자 AI기반 안부확인서비스(2160-476)

9)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2) 검토의견: 법적 근거 마련 및 사업 추진 일정을 감안한 예산 편성 필요

□ 국가보훈부는 2024년 민간기업과 MOU를 통해 AI기반 안부확인 서비스 시범사업(보보안심콜¹⁰⁾)을 추진하고, 2025년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실시간 안부 확인¹¹⁾ 서비스로 확대 운영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리대상으로 1인 가구 취약계층 중 복지서비스 미수혜자 8,522명을 선정하고, 고독사 위험군 판단지표를 토대로 고위험군·중위험군·저위험군·의심군 4단계로 분류하였음.

〈국가유공자등 고독사 예방 관련 추진경과〉

- (‘24.8) AI 기반 안부확인서비스 「보보안심콜」 시범사업 시행(수발신)
- (‘25.3) 판단지표 개발 및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 (‘25.4~8) 국가유공자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25.8) IoT(문열림센서)를 추가해 더 정밀한 안부확인서비스 지원(수발신+문열림)

(자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 고독사 관리대상 현황〉

고독사 관리대상	독거가구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서비스 미수혜
8,522명	주민등록상 1인가구 157,752명	9,654명	재가복지서비스, 요양급여 미수혜 8,522명

(자료: 국가보훈부)

〈고독사 위험군 인원 현황〉

(단위: 명, %)

구 분	전체 조사대상	위험군				의심군	사망 등
		계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인원	8,522	3,309	685	1,293	1,331	3,727	1,486
비율	100	38.8	8.0	15.2	15.6	43.7	17.4

(자료: 국가보훈부)

10) 스마트폰에 AI기반 통합관리점검 응용프로그램(앱)을 설치해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

11) 현관문, 냉장고 등에 센서(문열림 센서)를 부착해 문 열림 정보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

- 동 사업을 위한 2026년도 계획안은 고독사 관리대상 8,522명 중 위험군 등 4,000명을 대상으로 ① AI기반 자동전화 안부확인 서비스, ② AI기반 안부확인 기기(문열림 센서 등) 이용, ③ 모니터링 및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반용역비로 편성됨.

〈2026년도 고령독거유공자 AI기반 안부확인서비스 사업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억 5,200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552백만원 - 4,000명(독거 취약계층 고독사 관리대상) × 11,500원(서비스 단가) × 12개월 = 552백만원 * 대상(4,000명): 관리대상 8,522명의 중 위험군 3,309명과 위험군 전환 인원 등 고려하여 산정 **단가(11,500원): 자동전화(3,300원) + 안부확인 기기(3,200원) + 모니터링 및 긴급출동(5,000원)

(자료: 국가보훈부)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21년 4월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¹²⁾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사업과 비교하여 타당성과 고려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 및 국가보훈부 고독사 예방 사업〉

구분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
법적 근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강명구의원) 계류중
관리 대상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판단도구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위험군 선별	국가유공자 1인가구 취약계층 중 복지서비스 미수혜자 8,522명
지원 체계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보훈부 본부 직접 사업 진행
사업 내용	①안부관리, ②생활 개선 지원, ③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④사후관리 중 지자체 여건별 1개 이상 선택	AI기반 안부확인서비스(자동전화 안부확인 + 안부확인 기기 이용 + 모니터링 및 긴급출동)

12) 일부 시·군·구('22년, 39개)에서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 추진 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24.7월~, 229개)

□ 첫째, 국가보훈부는 고독사 관리대상을 ‘1인 가구 취약 계층 중 재가 복지서비스와 요양급여 미수혜자’로 명확히 선정하고 있는데, 보건 복지부 사업과의 사각지대 발생 여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 사업은 경제·고용 위기, 건강 취약, 주거취약 등 위험요 인을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독사 위험자로 의심되는 경우 ‘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복지부 권고안)’를 활용하여 위험군을 선별하고 있는데, 국가보훈부 사업은 단순히 취약 계층 중 복지 서비스 미수혜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므로, 1인 가구 국가유공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 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 적용 판단 방법〉

○ 고독사 위험자 발굴조사 시 고독사 위험자 여부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판단도구**(복지부 권고안)*를 활용하여 결과가 **6점 이상인 경우 위험자로 판단**

* **(조사문항)** ①식사 빈도, ②음주 빈도, ③타인과의 소통 빈도, ④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 유무, ⑤일정한 소득 유무, ⑥임대료·공과금 체납, ⑦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2점), ⑧청결유지, ⑨외로움(2점), ⑩자살 생각(2점) **총 10개 문항, 13점 만점**

(자료: 보건복지부)

□ 둘째, 사업 수행체계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국가보훈부는 본부가 직접 용역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바, 계약 일정·방법 등 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훈부는 예산 확정 후 구체적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본부에서

계약 절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업체가 각 지방 출동서비스 업체를 연계한다는 계획임. 세부 계획 수립, 용역 계약 체결, 각 지방 출동서비스 업체 연계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상반기 중 실시는 어려워 보이며, 보건복지부도 사업 확대 과정에서 신규 참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6개월분만 반영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매년 업체가 변경될 경우 안정적인 사업 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다년도 계약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국가보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 내용 중 ICT 활용 안부확인 사업과 유사한데, 고독한 임종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생전에 고독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지역별 여건이나 특색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 내용〉

사업유형		사업내용
(1)	안부확인	▪ (인적 자원망 활용) 지역사회 내 인적 자원망(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하여 대면·비대면(전화) 안부확인 서비스 제공 ▪ (ICT 활용) AI 안부전화, 스마트플러그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구축
(2)	생활 개선 지원	▪ (환경 개선) 저장강박 등 고독사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운영 ▪ (행태 개선) 고립적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발굴조사 및 안부확인용 현물지원, 외출 유도용 생활쿠폰 지급 등
(3)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 (공동체 공간 운영) 고독사 위험군이 부담 없이 자주 방문해 비용부담 없이 편하게 시간을 보내고, 복지·일자리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규모 공간 조성 ▪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공간 또는 다양한 민·관 시설을 활용하여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운영 * 자조모임, 문화활동(요리, 독서, 원예 등), 체육활동(걷기, 운동, 등산 등), 식사 및 다과모임 등
(4)	사후관리	▪ (유품정리·특수청소) 고독사 사망자 중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정리 및 특수청소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 또한,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에서 일반국민 대상 고독사 예방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되,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더욱 두텁게 추가 지원하는 것을 추진방향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관리대상 전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업 내용과 차별화된 국가유공자 맞춤형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넷째,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과 달리 고독사 예방정책의 법적 근거가 없어, 효율적 정책 추진이 어렵고 부처 간 자료공유의 근거가 없어 협업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고독사 현황 자료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¹³⁾

에 따른 형사사법정보로서, 법적 근거가 없는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고독사 현황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한계가 있음.

- 현재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관계기관 자료요청 근거 신설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법률 개정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국가보훈부는 조속한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훈부는 고독사 예방사업의 실효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사업 추진 일정을 감안한 적정 예산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1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3. 국가유공자등 대부관리¹⁴⁾

1)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국가유공자등 대부관리’는 대부사업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위탁은행 계약금리와 보훈대부 이율의 차이 보전, 채권회수업무 외부 위탁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의 사업으로, 2026년 계획안은 전년 대비 4억 4,300만원 (4.2%) 증가한 111억원이 편성됨.

〈2026년도 국가유공자등 대부관리 사업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 획(A)	2026년 계 획안(B)	증 감	
				(B-A)	(B-A)/A
국가유공자등 대부관리	17,368	10,657	11,100	443	4.2
- 이차보전금	17,280	10,547	10,893	346	3.2
- 채권회수업무위탁 수수료	88	110	110	-	-
- 주택지원시스템 운영	-	-	97	97	순증

(자료: 국가보훈부)

14) 세부사업: 국가유공자등 대부관리(2259-390~392)

2) 검토의견

□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기저리 대부를 실시하고 있는데, 민간은행 전용 상품(“나라사랑대출”)을 통한 위탁대부와 신용에 문제가 있어 위탁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한하여 보훈관서에서 직접대부를 지원하고 있음.

○ 위탁대부는 2007년부터 시행되어 현재 2개 은행과 대부업무 위탁협약¹⁵⁾을 체결하여 운영 중이며, 은행 자체 재원으로 대부를 실시하되, 은행금리와 보훈금리의 차이만큼을 보훈기금으로 매월 보전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짐.

〈보훈대상자 대부 지원 제도 현황〉

구분	내용
목적	·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대상	·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 중 1명 또는 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자 · 국가유공자·5·18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중 1명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유족 배우자
종류	· 농토구입대부 · 주택대부(주택구입·대지구입·주택신축·주택개량·주택임차 대부) · 사업대부 · 생활안정대부
방식	· <u>위탁대부</u> :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은행 재원으로 대부를 실시하고 이차보전 · <u>직접대부</u> : 위탁대부가 불가능한 저신용자에 대해 보훈관서에서 대부 실시

(자료: 국가보훈부)

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위임 및 위탁)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업무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 위탁대부 사업 규모를 살펴보면, 2023년 이후 대부 규모는 축소되는 추세이나, 이차보전금 집행액은 증가('22년 77억 7,900만원 → '23년 108억 3,500만원 → '24년 172억 8,000만원)하고 있는데, 이차보전의 대상이 되는 대출잔액이 누적되고 있고, 시중금리가 상승하였다는 점에 기인함.

〈최근 위탁대부 규모 및 사업비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8월	2026년
인 원	22,742	25,145	23,907	17,504	
대부액	184,806	206,779	171,712	102,166	
이차보전금*	7,779	10,835	17,280	10,547	10,893

* 2022년~2024년 결산 기준, 2025년 및 2026년은 계획(계획안) 기준임.

(자료: 국가보훈부)

〈연도별 대출평균잔액 및 이차보전을 현황〉

(단위: 백만원, %)

연 도	2022년	2023년	2024년
대출채권 평균잔액	590,356	642,053	683,034
보훈금리	1.4~2.4	2.4~3.4	3.0~4.0
시중금리	(부동산) 2.55~5.21 (신용) 3.30~6.18	(부동산) 4.70~5.04 (신용) 5.19~5.75	(부동산) 4.53~4.94 (신용) 4.99~5.39
평균 이차보전을	1.34	1.69	2.53

(자료: 국가보훈부)

(1) 연례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 최소화 필요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차보전금 산출 근거를 살펴보면, 대출채권 잔액과 이차보전을 상승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추계로 인해 적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음.

○ 대출채권 잔액이 누적되고 있으나 최근 3년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하였고, 이차보전율은 최근 기준이 아닌 감축 적용하였음.

〈2026년도 이차보전금 계획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계 획 액	산출내역
국가유공자대부관리	10,720	- 최근 3년 위탁채권평균잔액(630,413백만원) × 이차보전을 감축 적용(1.7%)
5.18민주유공자대부관리	96	- 최근 3년 위탁채권평균잔액(6,115백만원) × 이차보전을 감축 적용(1.56%)
특수임무유공자대부관리	77	- 최근 3년 위탁채권평균잔액(4,211백만원) × 이차보전을 감축 적용(1.83%)
합계	10,893	

(자료: 국가보훈부)

□ 계획액 대비 이차보전금 증가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결과로 이어지는데, 매년 이차보전금 변경이 반복되고, 그 규모도 증가하고 있음('22년 47억 4,800만원 → '23년 61억 800만원 → '24년 67억 5,300만원).

<2022년~2025년 이차보전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변경 증액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세목명 (세목코드)	계획액	변경액	계획현액
2022	국가유공자대부관리 (2259-390)	이차보전금 (320-05)	2,992	4,674	7,666
	5·18민주유공자대부관리 (2259-391)	이차보전금 (320-05)	21	45	66
	특수임무유공자대부관리 (2259-392)	이차보전금 (320-05)	18	29	47
	계		3,031	4,748	7,779
2023	국가유공자대부관리 (2259-390)	이차보전금 (320-05)	4,789	6,029	10,818
	5·18민주유공자대부관리 (2259-391)	이차보전금 (320-05)	39	48	87
	특수임무유공자대부관리 (2259-392)	이차보전금 (320-05)	29	31	60
	계		4,857	6,108	10,965
2024	국가유공자대부관리 (2259-390)	이차보전금 (320-05)	10,498	6,663	17,161
	5·18민주유공자대부관리 (2259-391)	이차보전금 (320-05)	87	53	140
	특수임무유공자대부관리 (2259-392)	이차보전금 (320-05)	72	37	109
	계		10,657	6,753	17,410

(자료: 국가보훈부)

- ☐ 동일한 사유로 매년 기금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국가보훈부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연례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2) 이차보전금 미지급금 누적 해소 필요

□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도 부족하여 이차보전금 미지급금 누적('22년 1억 2,600만원 → '23년 96억 8,000만원 → '24년 119억 6,900만원 → '25년 9월 118억 5,800만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미지급이 발생하고 누적되고 있는 것은 국가대부사업에 대한 민간은행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이자 청구 등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보훈부는 미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차보전금 미지급금 누적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9월
계획액	3,031	4,727	10,527	10,547
변경액	4,748	6,108	6,753	-
계획현액	7,779	10,835	17,280	10,547
지급 의무(A)	7,831	20,389	19,569	10,436
지급액	7,779	10,835	17,280	10,547
당해연도 지급(B)	7,705	10,709	7,600	838
과거 미지급금	74	126	9,680	9,709
발생 미지급금 (A)-(B)	126	9,680	11,969	9,598
누적 미지급금	126	9,680	11,969	11,858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시중은행 대출 금리의 급격한 인상 및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이차보전금 미지급금이 발생하여 위탁은행에 미지급한 이차보전

금의 차년도 이월을 협조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함.

- 또한, 대부 한도액이 클수록 이차보전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대부 한도액 축소, 적정 위탁대부 총량 설정 등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입장임.

□ 그러나 미지급금 누적으로 인한 협약 재검토 가능성과 이로 인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지급금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투입되는 재원은 회수가 불가능하나 대출 계약기간 중에는 지속적으로 재정지출 의무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 대비 실제 집행 규모가 커질 수 있음.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 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과 동시에 사업방식의 적정성, 지속가능한 운영 규모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훈부는 누적 미지급금 문제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Ⅳ.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수입]

1. 토지매각대¹⁶⁾

1)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토지매각대’ 사업은 친일반민족행위자 국가귀속재산 토지 매각 수입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3억 700만원 증가(10.0%)한 33억 7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토지매각대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A)	2026년		증 감 (B-A)	(B-A)/A
			요구안	계획안(B)		
토지매각대	1,795	3,072	1,975	3,379	307	10.0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매각 부진 상황을 반영하여 감액 조정 필요 등

- 동 사업은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동 법에 따라 환수된 친일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동 법에 따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절차를 거치고 있음.

16) 세부사업; 토지매각대(72-721)

□ 친일 국가귀속재산 토지 매각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153억원을 정점으로 2023년부터는 매각대금이 20억원을 하회하고 있음.

○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매각액이 100억원을 하회하자, 국가보훈부는 2022년 3월 당시 입지조건 등을 고려해 활용도가 높은 토지 140필지를 뽑아 목록을 공개하고 매수를 독려하는 등 대대적으로 친일 귀속재산 공매에 나섰고, 이에 2022년 153억원을 매각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그러나, 2023년부터는 실적이 현저히 줄어들어, 2023년 9억원, 2024년 18억원, 2025년 9월 기준 4억원 등 매각실적이 매우 부진함.

- 매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활용도가 높고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토지는 일찍 매각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캠프측은 ‘(최저입찰가를 결정하는) 감정가가 공시지가와 크게 차이가 나다 보니 이득이 없다고 보는 것 같다’고 설명하고 있음.¹⁷⁾

〈매각 실적〉

(단위: 억원)

연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계
필지	31	78	118	62	174	52	30	77	31	20	12	20	4	2	11	21	36	779
매각	26	80	67	55	142	18	91	56	86	12	4	61	7	150	8	23	11	897
수납	26	57	78	46	145	38	31	91	88	24	17	15	57	153	9	18	4	897

(자료: 국가보훈부)

17) 시사저널, ‘파묘’ 안 하고 몰수한 친일파 땅 600억…정작 유공자에겐 ‘그림의 떡’, 2024.3.15

□ 총 1,452필지의 친일 귀속 재산 중 779필지가 이미 매각되고 잔여 재산은 818필지임.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도로, 하천, 군부대 등 법령상 매각 제한 사유가 있는 매각제한 재산을 제외한 매각 가능 재산은 255필지로, 공시가는 85억원 정도임. 2025년 토지 공시지가율(실거래가 대비 공시지가 비율) 평균치인 65.5%를 적용하면, 매각 가능 재산의 시세는 대략 130억원으로 추정됨.

〈국가보훈부 소관 잔여 친일 귀속 재산 현황〉

구분		계	전·답	대지	임야	잡종지 등
합계	필지	818	365	107	286	60
	면적(천㎡)	6,359	407	30	5,852	70
	공시가(억원, %)	404(100)	61(15.1)	33(8.2)	299(74.0)	11(2.7)
매각 가능 재산	필지	255	136	15	87	17
	면적(천㎡)	970	203	2	711	54
	공시가(억원, %)	85(21.0)	24(28.2)	1(1.2)	56(65.9)	4(4.7)
매각 제한 재산*	필지	563	229	92	199	43
	면적(천㎡)	5,389	204	28	5,141	16
	공시가(억원, %)	319(79.0)	37(11.6)	32(10.0)	243(76.2)	7(2.2)

주: 2025년 9월말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 현재 매각 가능 귀속재산은 캄코가 주기적으로 공매에 붙이고 있고, 매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는 등 국가보훈부와 캄코가 재산 매각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최근 매각 부진을 반영하여 당초 국가보훈부가 요구한 수입계획액은 19억 7,500만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와 편성 논의 과정에서 2025년 계획액보다 10% 상승한 33억 7,900만원을 편성하

기로 확정되었는데, 2026년 계획액의 경우 최근의 매각 부진 상황을 반영하여 감액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 이와 별도로, 국가보훈부는 매각 제한 재산의 매각을 위해 지자체, 군부대 등과의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대부분 산지인 용도를 변경하여 매각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국가보훈부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 친일파로부터 환수한 재산 341건 중 12건이 후손에게 재매각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5년 5월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내 '친일재산 매각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귀속재산의 대부계약 시에는 친일파 후손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 않은바, 매각 뿐만 아니라 대부 시에도 친일파 후손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지출]

1. 독립유공자및유족지원¹⁸⁾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독립유공자및유족지원’ 사업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1억 원(1.1%) 증가한 980억 9,700만원이 편성됨.

○ 내역사업인 ‘(손)자녀 생활지원금’ 내역사업은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생계가 곤란한 독립유공자 (손)자녀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1억 300만원 증가한 929억 8,1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독립유공자및유족지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 획(A)	2026년 계 획안(B)	증 감 (B-A)	(B-A)/A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	99,843	96,997	98,097	1,100	1.1
- (손)자녀 생활지원금	94,865	91,878	92,981	1,103	1.2

(자료: 국가보훈부)

18) 세부사업: 독립유공자및유족지원(3141-401)

2) 검토의견

(1) 대상인원 추계 정확성 확보 필요

- 「(손)자녀 생활지원금」 내역사업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¹⁹⁾에 따라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근 5년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국가보훈부는 2021년부터 매년 계획액이 부족함에 따라 연례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일반회계전입금을 증가하는 방식으로 부족액을 충당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매년 실집행액이 계획현액을 초과하는 것은 대상인원에 대한 추계의 낮은 정확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연도별 계획 대비 실제 지원 인원을 살펴보면, 매년 실제 지원인원이 계획인원을 상회함.

- 2021년부터 매년 계획인원이 지원인원보다 과소 계상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15억원~83억원을 계획변경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 실정임. 2025년에도 7월말 기준 집행률은 61.5%에 달하며, 국가보훈부에 의하면 약 76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1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21	‘22	‘23	‘24	‘25. 7.
단 가	100~478천원				
계획액	79,534	87,849	91,878	91,878	91,878
(계획인원)	(18,766)	(20,535)	(21,186)	(21,186)	(21,186)
집행액	87,764	90,504	93,378	94,865	56,546
(집행인원)	(20,498)	(20,905)	(21,479)	(21,734)	(22,260)
집행률	110.3	103.0	101.6	103.3	61.5

(자료: 국가보훈부)

□ 독립유공자 신규 포상 등으로 유족 인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는 2026년도 계획안 편성 시 지원대상인원을 ‘2022~2024년 3년 평균 지원자 수(21,373명) 또는 2025년초 지원자 수(22,260명)’가 아닌 ‘2025년 계획안 편성계획인원(21,186명) 대비 1.1% 증가한 21,402명’를 적용하는 등 과소계상하였는바, 2026년 집행 시에도 기금 계획변경을 통해 부족액을 충당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됨.

□ 국가보훈부는 (손)자녀 생활지원금이 대상자에게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손)자녀 생활지원금’ 사업에 적정 지급인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보훈부는 추계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지원금 인상 및 일반회계 전입 검토 필요

-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의 123개 과제와 광복절 기념사 등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예우 강화’를 명시하고 있으나,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은 단 1원의 인상도 없는 동결에 그침.
- 생활지원금은 2019년 최대 46.8만원에서 2025년 최대 47.8만원으로 1만원(2%) 인상에 그쳤으며, 2026년에도 2025년과 같은 금액 지급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됨. 반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물가상승률은 12.2% 상승하였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 제공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2019년 최대 51.2만 원에서 2025년 최대 76.5만 원으로 약 24.3만원(47.5%) 인상되었음.
- 2018년부터 국가보훈부가 독립유공자의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까지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매년 독립유공자 (손)자녀생활지원금 지급 소요가 90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자체수입 확보 여력이 부족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특성상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내역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일반회계 전입에 의존하고 있음.
- 2026년 계획안에는 937억 5,400만원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편성하였고, 이 중 929억 8,100만원이 독립유공자 (손)자녀생활지원금에 쓰인다고 볼 수 있음. 2026년 계획액도 과소 계상되어 있다는 점

을 감안하면 2026년 집행예상액은 1,000억에 달할 것으로 보임.

〈순국선열·애국지사기금 수입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입 규모*				손자녀 생활지원금집 행액**(B)	
	합계	자체수입	일반회계 전입금(A)	여유자금 회수		A/B
2017년	51,874	35,710	-	16,164	-	-
2018년	143,021	5,282	54,686	83,053	72,522	0.75
2019년	197,635	4,589	76,203	116,843	77,344	0.99
2020년	161,893	7,712	76,689	77,492	81,920	0.94
2021년	167,035	11,239	80,826	74,970	87,764	0.92
2022년	253,010	20,192	88,848	143,970	90,504	0.98
2023년	335,655	8,895	92,651	234,109	93,378	0.99
2024년	200,682	7,428	92,651	100,603	94,865	0.98
2025년	149,093	8,751	92,583	47,759	90,627	1.02
2026년	151,269	9,407	93,754	48,108	92,958	1.01

* 수입 규모: 2017~2024년 결산 기준, 2025~2026년 계획 기준

** 손자녀 생활지원금 계획액: 당초 계획액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 이와 같이 동 사업의 소요 재원 전액이 사실상 일반회계 재정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형식적으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수입-지출을 거쳐 집행되고 있는바, 국가보훈부는 동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다른 보훈대상자와 달리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만 손자녀까지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이관할 경우 다른 보훈대상자 지원 확대 요구 등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독립유공자 외의 유공자’의 지원 확대 요구 등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 발생 우려는 각 보훈대상자 간에 지원대상 범위가 다르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함.
- 오히려, 동 사업이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에 있기 때문에 지원금 인상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으며, 기금의 자체 수입 비중(최근 5년간 9.3%)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매년 사업의 계획액 또한 과소 편성되는 측면이 있음.
- 또한, 현재 국회에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고손자녀²⁰⁾ 등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의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다수의 개정안이 계류 중인바,²¹⁾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의하면 동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평균 추가재정소요가 740억 4,700만원임. 지원 대상 확대의 경우를 대비하여서라도 동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20) 증손자녀의 자녀

21) 안규백의원안(제2202835호), 강준현의원안(제2208215호), 이병진의원안(제2208519호), 박용갑의원안(제2208598호) 등

【 금융위원회 소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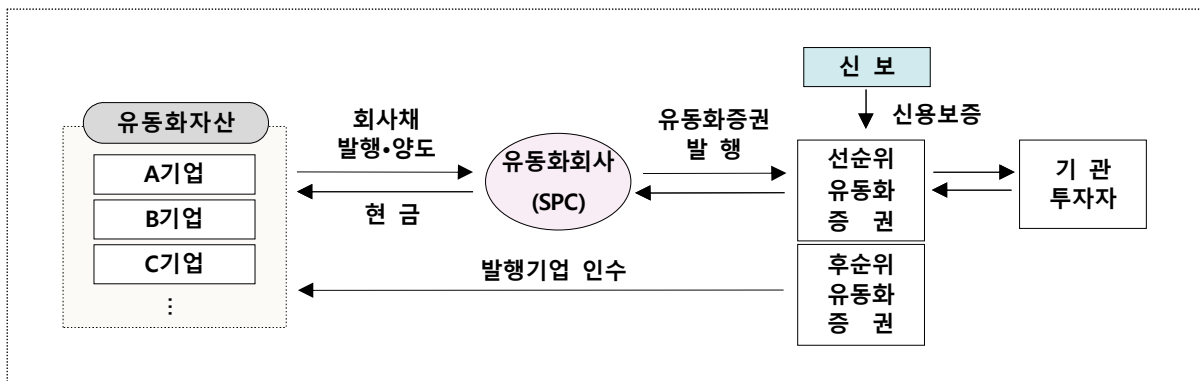
제1장 신용보증기금

1. 신용보증기금 P-CBO 직접 발행 관련 수입·지출 계획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 필요

1) 사업 개요

- 신용보증기금은 별도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가 개별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또는 대출채권을 기초로 발행한 유동화증권(P-CBO)의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유동화회사보증 제도를 2000년 7월 도입하여 운영해왔음.

〈유동화회사보증 기본구조〉



(자료: 금융위원회)

- 이러한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한 유동화증권 발행 및 보증은 유동화 증권 발행인이 기금이 아닌 유동화전문회사가 되어 특수채²²⁾로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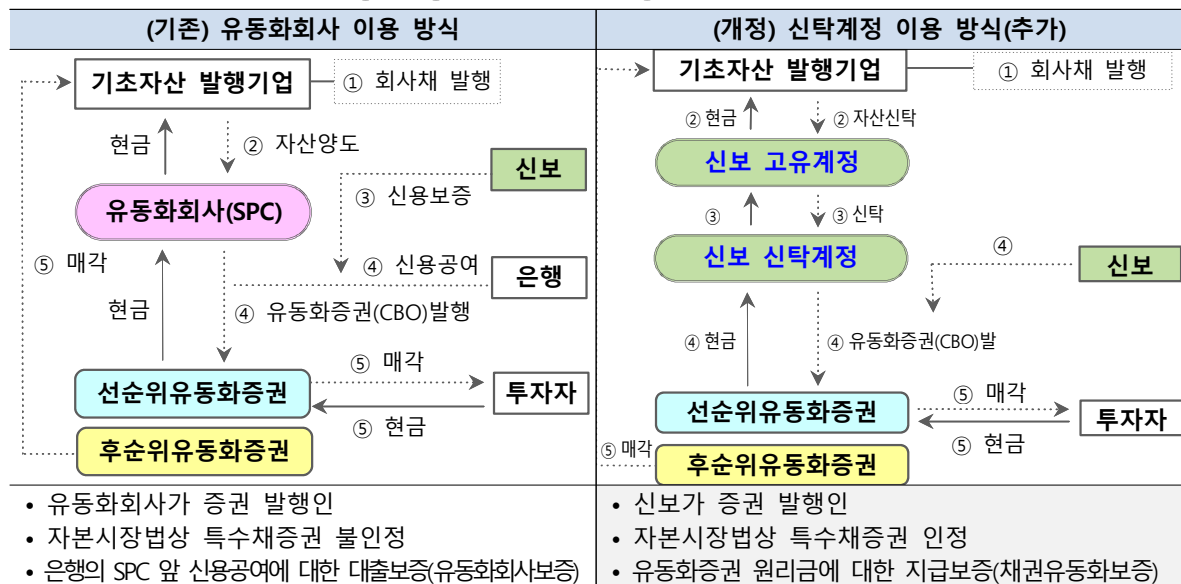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특수채”란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제4 조제3항)을 말함

정받지 못하므로 ① 특수채 대비 높은 조달비용²³⁾을 부담하고, ② 투자자의 투자회피 성향²⁴⁾으로 시장 유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지난 2025년 4월 1일 개정되고 10월 2일 시행된 개정 「신용보증기금법」은 신용보증기금이 신탁방식으로 유동화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 신탁방식이란 신용보증기금이 개별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또는 대출채권(기초자산)을 직접 인수한 이후, 기금의 신탁계정에 해당 기초자산을 신탁하고, 신탁계정이 이를 기초로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수행하는 방식임.

〈유동화증권 직접 발행 기본구조〉



(자료: 금융위원회)

23) 유동화증권 발행 시 기준금리가 특수채가 아닌 회사채 금리로 적용

24) 원리금 지급이 보장되는 사실상 무위험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채로 분류됨에 따라 투자기관이 국민연금, 산업은행 등 5개 내외로 제한

- 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증권을 직접 발행할 경우 발행금리가 인하²⁵⁾되고, 자산관리수수료, 업무수탁수수료 등이 절감되어 개별기업의 이자 부담이 약 50bp(0.5%)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유동화증권 직접 발행에 따른 수수료 절감 내용〉

구 분	수수료(Pool 당)		절감가능여부
자산보유자(증권회사)	사채인수수료	대·중견 20bp, 중소 15bp	○
	주관사수수료	1bp	-
신용보강기관(신보)	신용보증료	50~140bp	-
자산관리자(신보)	자산관리수수료	4.0bp	○
업무수탁자	업무수탁수수료	2.4bp	○
자금관리자(은행)	자금관리수수료	1.65bp	○
	신용공여수수료	5bp	○
법무법인	법률자문수수료	16.5백만원	-
회계법인	자산실사수수료	16.5백만원	-
신용평가사	신용평가수수료	1.2bp	-

(자료: 금융위원회)

-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에 따른 내규 제·개정,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유동화증권을 직접 발행할 예정이며, 시행 첫 해임을 감안하여 전체 유동화회사보증 신규 공급 계획액 2.8조원 중 7,500억원을 직접 발행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임.

25) 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유동화증권 직접 발행과 유사한 제도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직접 발행하는 특수채인 ‘주택저당증권(MBS)’이 있으며, 최근 3년 간 주택저당증권과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평균 금리 차이는 26bp(0.26%)임.

2) 검토의견

□ 기존에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SPC)를 별도로 설립하여 유동화증권(P-CBO)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초자산 인수(매입) 및 유동화증권 발행(매각), 기초자산으로부터의 이자수입²⁶⁾ 및 유동화증권에 대한 이자 지급 등의 행위 주체가 유동화전문회사이므로, 신용보증기금은 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별도의 기금운용계획안 상 수입 및 지출 항목을 계상하지 않았음.

○ 다만, 개별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또는 대출채권(기초자산)이 만기에 상환되지 않아 보증을 제공한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출은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2431-301)’ 세부사업²⁷⁾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고,

○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만기 도래 후 해산 및 청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재원, 대물주식 배당금²⁸⁾ 등의 수입은 ‘정부출자수입(52-521)’ 및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과목을 통해 수납하고 있음.

26) 회사채 또는 대출채권 발행 기업이 해당 회사채 또는 대출채권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를 의미

27)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를 위하여 4,384억 4,600만원(전년 대비 1,084억 4,100만원(19.8%) 감액)이 편성되어 있음.

28) 신용보증기금이 P-CBO에 대한 대위변제를 한 후 SP가 보유한 유동화자산(부실편입기업의 출자전환주식 등)을 양도받은 후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을 의미

□ 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기초자산의 인수(매입) 및 유동화증권 발행(매각) 주체가 되고, 이에 따라 개별기업으로부터 기초자산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고,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관련 수입·지출 내역이 신규로 편성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보면,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기초자산을 매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출 7,500억원 및 유동화증권에 대한 이자지급 및 기타 운영경비 80억원 등 7,580억원의 지출과 유동화증권 매각에 따른 수입 7,500억원 및 개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기초자산에 대한 이자 80억원 등 7,580억원의 수입이 각각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되어야 함²⁹⁾.

〈유동화증권 직접발행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반영 필요 내역〉

수입		지출	
유동화증권 발행	기초자산 이자	기초자산 매입	유동화증권 이자 등
7,500억원 (투자자에게 유동화증권을 매각해서 발생)	약 80억원 (회사채등 발행기업이 지급하는 이자)	7,500억원 (기업으로부터 회사채등 인수 비용)	약 80억원 (이자지급 60억원, 운영비 20억원 등)

(자료: 금융위원회)

29) 해당 내역은 유동화증권 직접 발행 규모를 7,500억원으로 전제하였을 때 산출되는 내역임.

□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2026년도 신용보증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이러한 유동화증권 직접 발행에 부수되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이 기금운용계획안 편성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음.

○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2026년도에 유동화증권을 직접 발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안에 위의 수입(7,580억원) 및 지출(7,580억원) 계획안을 반영하여 작성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협의·조정 과정에서 최종 반영되지 않은 채로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금관리주체는 매년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관리주체와 협의·조정을 거쳐 확정된 후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³⁰⁾.

□ 이와 같이 유동화증권 직접 발행을 위한 수입·지출이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되지 않을 경우 ① 2026년도에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없거나, ②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증권을 직접 발행하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되지 않은 수입·지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30) 「국가재정법」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⑤ 기금관리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관리주체와 협의·조정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⑧ 제1항·제5항 및 제6항에 규정된 기금관리주체 중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각각 같은 항에 규정된 제출·협의 등을 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국가가 지난 2025년 4월 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은 유동화증권 발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부칙³¹⁾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시행되었으나, 기금운용계획안에 적정한 수입·지출 내역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2026년에 실질적으로 운용되지 못한다면 국회의 법률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임.
-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증권 직접 발행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금의 업무에 해당하고, 「신용보증기금법」상 기금의 모든 업무와 관련된 수입·지출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금운용계획안 외로 유동화증권 직접 발행 관련 수입·지출이 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31) 개정 신용보증기금법 부칙에서는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로 규정

〈「신용보증기금법」 상 기금의 업무에 대한 수입·지출 사업 현황〉

업무(제23조)		기금운용계획안 세부사업	
조항	내용	수입	지출
제1호	기본재산의 관리	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85-852) 등	통화금융기관예치(9702-971) 등
제2호	신용보증	면허료 및 수수료(65-651) 등	일반보증 대위변제(2431-300) 등
제2호의2	보증연계투자	고정자산매각익(65-695) 등	보증연계투자(2431-308)
제2호의3	양수자산 권리행사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등	구상권관리(2431-304)
제2호의4	중소·중견기업 팩토링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등	팩토링 금융(2431-314)
제3호	경영지도	면허료 및 수수료(65-651)	경영지도(2431-307)
제4호	산용조사·산용정보관리	면허료 및 수수료(65-651)	미래성장성평가(2431-309) 신용정보(정보화)(2431-315)
제5호	구상권 행사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등	구상권관리(2431-304)
제6호	신용보증제도 조사·연구	면허료 및 수수료(65-651)	신용보증제도 조사·연구(2431-318)
제7호	유동화보증	면허료 및 수수료(65-651) 등	유동화회사보증 대위변제(2431-301)
제8호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미편성	미편성

(자료: 금융위원회)

- 참고로, 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서는, 기금이 회사채등 기초자산을 토대로 유동화증권을 직접 발행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초자산 취득, 이자 수취 및 지급 등 일련의 행위(회사채등 유동화신탁)를 신용보증기금의 업무³²⁾로 추가하였음.

32)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의2. "회사채등 유동화"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기금이 기업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인수한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한 후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이하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이라 한다)

제23조(업무) ①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8.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 따라서, 2026년부터 신용보증기금이 적절하게 유동화증권 직접 발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유동화증권 직접 발행과 관련한 수입·지출 내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참고로, 유동화증권 직접 발행 규모를 당초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이 요구한 7,500억원 규모로 편성하는 것을 전제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되어야 할 수입 및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음.

〈유동화증권 직접발행에 관련 기금운용계획안 수입·지출 반영내역(안)〉

(단위: 백만원)

수입		지출	
사업명	금액	사업명	금액
기타재산이자수입 (11-546)	7,974	유동화증권 직접발행(신규) (2431-320)	758,014
기타유가증권매각대 (31-843)	750,000		
합계	757,974	합계	758,014

(자료: 금융위원회)

2. 일반회계전입금³³⁾: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1)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일반회계전입금”은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 등에 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계상한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200억원(20.0%)이 감소한 800억원이 편성됨.

〈2026년도 일반회계전입금 수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일반회계전입금	80,000	-	100,000	80,000	△20,000	△20.0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 신용보증기금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된 일반회계전입금 800억원과 자체재원 800억원 등 총 1,600억원의 재원을 활용하여 AI 등 첨단전략산업 영위기업에게 2조원 규모³⁴⁾의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임.

33) 세부사업: 일반회계전입금(91-911)

34) 보증공급 2조원* = 재원 1,600억원(정부출연 800억원 + 자체재원 800억원) × 12.5배

- 구체적으로 보면, 우대보증은 AI, 바이오, 문화, 방산·항공, 기후테크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³⁵⁾에 따라 지정된 전략기술 및 「조세특례제한법」³⁶⁾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 첨단전략산업 영위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보증비율은 기존보다 5% 상향한 95%로 하며, 보증료율은 0.5%(AI 산업은 최대 0.7%) 차감하고, 보증한도는 기업 당 10억원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임.

〈AI 첨단전략산업 우대보증 주요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지원대상	· AI(A), 바이오(B), 문화(C), 방산·항공(D), 기후테크(E) + 「첨단전략산업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첨단전략산업(반도체, 이차전지 등)
보증비율	· 95% ※ 현재 해당 업종에 적용 중인 90% 대비 상향
보증료율	· 0.5%p 차감 (AI산업은 최대 0.7%p* 차감) * 최대 차감료율 적용
보증한도	· 기업당 10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3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기술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술이 산업 공급망 및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2. 해당 기술의 성장잠재력과 기술난이도 / 3. 해당 기술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4. 해당 기술이 가지는 산업적 중요성 / 5. 해당 기술이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6)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항 내용 생략)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최근 각 국의 첨단산업에 대한 패권경쟁 과정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주요 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는 점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임.

○ 국회도 지난 2025년 9월, 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에 대해 효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도록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한 바 있음.

○ 신용보증기금은 동 사업의 일반회계전입금과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2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해당 기업들이 비교적 낮은 금융비용으로 적시에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 한편, 정부는 앞서 설명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과 함께 5년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첨단전략산업 영위기업 등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임.

○ 정부는 2025년 3월,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위해 약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한국산업은행에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이후 국회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기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첨단전략산

업기금은 75조원 규모로 확대³⁷⁾되었으며, 정부는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을 포함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구성할 예정이다.

-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성장펀드는 AI,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R&D, 중소·중견 및 장비·설비기업 등 사업 전·후방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방식은 직접 지분투자, 간접 지분투자 등 투자방식뿐만 아니라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 대출 등도 함께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계획³⁸⁾임.

□ 이러한 국민성장펀드와 동 사업을 통한 신용보증기금의 우대보증 지원 대상이 유사하다는 점 및 국민성장펀드의 지원 방식 등을 감안할 때, 자금 지원에서 소외되는 중소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 우대보증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계획을 면밀히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민성장펀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대상³⁹⁾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37) 2025. 9. 9. 공포, 2025. 12. 10. 시행 예정

38)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 150조원 국민성장펀드가 함께합니다.」, 2025. 9. 10. 참조

39)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은 국민경제 및 산업경쟁력 유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하 "첨단전략산업기업"이라 한다) 및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거래를 하거나 첨단전략산업기업에 투자 등을 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3. 그 밖에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에 따라 지정된 전략기술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국가전략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으로, 동 우대보증 대상 기업과 유사함.

- 다만, 정부가 발표한 국민성장펀드의 운용 방안⁴⁰⁾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는 여신보다는 투자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산업 내 파급 효과가 큰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집중 지원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자금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보증기금의 우대보증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을 중심⁴¹⁾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아울러, 기존 신용보증기금이 수행하던 일반보증에서도 첨단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이 이루어져 왔으므로, 동 우대보증을 통해 지원하는 대상 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신용보증기금이 자체 재원을 활용한 일반보증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해 제공한 보증규모를 살펴보면, 2021년 약 1.7조원에서 2024년 약 2.7조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25년의 경우에도 9월말 기준 약 2.6조원을 공급하였음.

40)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대한민국 경제 제도약 150조원 국민성장펀드가 함께합니다.」, 2025. 9. 10. 참조

41)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과 회사채등 유동화를 수행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첨단전략산업 영위기업 보증지원 현황(일반보증 신규공급 기준)〉

(단위: 개, 억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9월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3,037	17,016	2,528	14,352	3,083	18,701	3,422	26,842	3,309	26,414

(자료: 금융위원회)

-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일반회계전입금과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2조원 규모의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것은 기존 일반보증 프로그램과 달리 첨단전략산업 영위기업 등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조건을 우대하여 보증을 공급하려는 것이므로,
- 동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및 우대조건 등에 대해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임.

3. 업무용건물⁴²⁾: 연내 집행가능성 없는 공사비 감액 필요

1)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업무용건물” 사업은 점포 이전 등을 위해 업무용 건물을 취득하거나, 노후화된 업무용 건물에 대하여 대수선 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82억 3,900만원(57.6%)이 증가한 225억 3,3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업무용건물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업무용건물	2,396	14,294	14,294	22,533	8,239	57.6

2) 검토의견

- 신용보증기금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구지점 건물 대수선 공사를 위해 40억원을 편성하였음.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대구지점 건물이 준공 후 44년이 경과하여 배관 노후화, 균열에 따른 누수 등이 발생하고 있어 대수선 공사를 통해 골조를 제외한 건물 주요 부위를 일괄하여 리모델링하려는 것임.

42) 세부사업: 업무용건물(2431-305)

〈신용보증기금 대구지점 건물 현황〉

※ 준공일: 1980. 12. / 소재지: 대구시 중구 경상감영길 221(동문동)

※ 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연면적 1,444평)

구 분	입점 조직	대구지점 전경
5층	대구재기지원단(17명)	
4층	영업본부(8명), 보험센터(12명)	
3층	이행팀(5명), 임피부장실(19명)	
2층	대구지점(21명)	
1층	기업은행 대구중앙지점	

(자료: 금융위원회)

- 대구지점 대수선 공사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계획하고 있는 총 소요 예산은 162억 8,400만원으로, 공사비, 설계비 및 감리·부대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신용보증기금 대구지점 대수선 공사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소요 예산	산출 근거
공사비	14,324	연면적 4,774.73㎡ × 3백만원/㎡
실시설계비	1,074	공사비 × 5%(설계대가요율) × 1.5배(리모델링)
기본조사설계비	86	실시설계비 × 8%
감리 및 부대비	800	감리비 및 기타 부대비용 예상액
합 계	16,284	-

(자료: 금융위원회)

- 2026년도는 공사 1년차로, 설계비 및 공사비의 일부가 계획안에 반영되어 있음. 구체적으로, 2026년도 계획안에는 기본조사설계비 및 실시설계비 10억원, 공사비 30억원이 편성되었음.

〈신용보증기금 대구지점 대수선 공사 연차별 예산 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년도	2027년도	2028년도
공사비	3,000	3,615	7,709
실시설계비	926	148	-
기본조사설계비	74	12	-
감리 및 부대비	-	300	500
합 계	4,000	4,075	8,209

(자료: 금융위원회)

- 신용보증기금은 2026년 중에 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2027년부터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나, 이러한 공사추진 일정에 따르더라도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공사비는 연내에 집행되거나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못하고 불용될 것으로 보임.

- 신용보증기금이 제출한 대구지점 대수선 공사 일정에 따르면, 2026년에 기본계획 수립, 설계 공모 및 설계용역 수행,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2026년 12월까지 이러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수행할 시공사를 선정 입찰하여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2027년 2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됨.

〈신용보증기금 대구지점 대수선 공사 월별 진행계획〉

구 분	내 용	일 정
기본계획 수립	- 용역을 통한 기본계획 수립 - 공간계획 수립 및 공사비 추정	'26.1~3월 (3개월)
설계공모	- 설계 공모 (조달청 나라장터) - 당선작 선정 및 계약	'26.4~6월 (3개월)
설계용역 / 인·허가	- 계획·중간·실시설계 및 공사내역 산출 - 각종 인증 및 공사 인·허가	'26.7~12월 (6개월)
공사입찰 및 계약	- 시공사 선정 입찰 - 선정 시공사와 계약 체결	'26.12월 ~ '27.2월 (3개월)
착공 및 준공	- 공종별 공사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건 폐) - 사용 승인 및 세금 납부	'27.3월 ~ '28.12월 (1년 10개월)

(자료: 금융위원회)

- 「국가재정법」 제72조에서는 기금관리주체가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⁴³⁾하고 있음.

43) 「국가재정법」 제72조(지출사업의 이월) ① 기금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출금액을 이월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유기관에 관하여는 제66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여기서의 지출원인행위⁴⁴⁾란 신용보증기금이 설계용역을 마치고 시공사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으므로, 신용보증기금이 2026년 이내에 시공사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공사비 30억원에 대해서는 지출원인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없고 불용처리하여야 함.

□ 이와 같이 연내에 집행 가능성이 없고, 다음연도 이월도 불가능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동 사업에 포함된 공사비 관련 지출계획안 30억원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감액할 필요가 있음.

44) 지출원인행위: 세출예산,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및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추가의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지출원인행위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지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기로 결정된 행위를 의미한다.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4. 위기대응특례보증 대위변제⁴⁵⁾: 보증공급 규모에 따른 대위변제 소요액 감액 필요

1)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위기대응특례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관세 피해 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유동성 부족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특례 보증을 지원한 후, 주채무자(기업)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182억 9,800만원이 신규 편성됨.

〈2026년도 위기대응특례보증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위기대응특례보증 대위변제	-	-	-	18,298	18,298	순증

2) 검토의견

□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관세피해, 내수침체 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유동성 부족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히 자금을 제공하는 ‘위기대응 특례보증’을 공급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1,000억원을 출연⁴⁶⁾한 바 있음.

45) 세부사업: 위기대응특례보증 대위변제(2431-319)

46)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출연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되어 확정되었음.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 신용보증기금은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출연금 1,000억원과 자체재원 1,400억원 등 총 2,400억원을 마련하여 이를 기반으로 총 3조원 규모⁴⁷⁾의 ‘위기대응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2025년 5월부터 공급하였음.

□ 위기대응 특례보증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 대상기업은 관세조치·산업위기·재난으로 인한 피해기업이고, 특례한도는 3억원(산업위기·재난)에서 5억원(관세조치)⁴⁸⁾, 보증비율은 90%, 보증료율은 0.3%p(산업위기·재난)에서 0.5%p(관세조치) 차감하도록 하였음.

○ 관세조치 피해기업이란 미국 수출입 실적이 감소하거나 자동차 등 관세 피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산업위기 피해기업이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⁴⁹⁾⁵⁰⁾의 주된산업 관련 협력기업을, 재난 피해기업이란 특별재난지역⁵¹⁾에 소재하는 기업을 각각 의미함.

47) 보증공급 3조원 = 재원 2,400억원(정부출연 1,000억원 + 자체재원 1,400억원) × 12.5배

48) 단,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모든 기업에 대해 소요자금 한도 내에서 공급

49)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계획(이하 “선제대응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50) 2025. 10. 기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현황

전남 여수시('25.5.1일 지정), 경북 포항시('25.8.28일 지정), 충남 서산시('25.8.28일 지정)

5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신설된 “위기대응특례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신용보증기금이 2025년 5월부터 공급된 위기대응 특례보증을 공급하기 위해 기금 내 별도 계정을 신설함에 따라, 위기대응 특례보증에서의 부실 발생 시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에 소요되는 지출액을 계상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임.

○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을 공급하는 경우 일반적인 보증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대위변제는 ‘일반보증 대위변제’ 세부사업(2431-300)에 편성된 지출액에서 집행하되, 위기대응 특례보증과 같이 기금 내 별도의 계정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사업⁵²⁾을 편성하고 있음.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위기대응특례보증 대위변제’ 세부사업에서는 대위변제 소요예산으로 18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산출근거는 2026년 ‘부실순증액’에 ‘예상 대위변제 이행률’을 반영하여 산출하였음.

〈2026년도 위기대응특례보증 대위변제 사업 산출근거〉

· 대위변제 소요예산(182억 9,800만원) = 부실순증액(258억원)* × 대위변제이행률(70.92%)**
* 부실순증액(258억원) = 2026년초 보증잔액(약 3조원) × 예상 부실률(0.9%)
** 대위변제이행률(70.92%) : $\frac{(5년누계)대위변제발생액}{(5년누계)기초부실잔액 + 당기부실순증}$
※ 단, 위기대응 특례보증은 2025. 5. 신설된 계정으로 5개년 경험률 산출이 불가능함에 따라 직접보증 대위변제발생률 및 해지율을 준용

(자료: 금융위원회)

52) 소상공인위탁보증 대위변제(2431-316), 대환보증 대위변제(2431-317) 등

□ 이와 같은 대위변제 소요금액 산출은 2025년도에 위기대응 특례보증 프로그램에서 당초 계획한 3조원을 전액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편성한 것이나, 실제 2025년 월별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임.

○ 위기대응 특례보증 프로그램의 월별 보증공급 실적을 살펴보면, 2025년 5월부터 9월까지 약 1조원 규모로 공급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대부분은 관세조치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된 것으로 나타남.

〈위기대응 특례보증 월별 보증공급 실적(2025년)〉

(단위: 개, 억원)

구 분	5월		6월		7월		8월		9월		총 합 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위기대응 특례보증	93	425	332	1,192	583	2,059	790	2,679	1,173	4,238	2,944	10,592
관세조치 피해기업	91	419	328	1,181	574	2,035	757	2,606	1,129	4,126	2,855	10,367
산업위기 피해기업	1	3	1	3	2	5	-	-	-	-	4	11
재난 피해기업	1	3	3	8	7	19	33	73	44	112	85	214

(자료: 금융위원회)

○ 이 중 산업위기 피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규모가 저조한 것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당초 특례보증을 출시할 당시 (2025. 5.)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 전남 여수시 1곳에 불과하였으나, 2025년 8월말 경북 포항시와 충남 서산시가 추가로 지정되어 향후 보증공급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함.

○ 다만, 산업위기 피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공급이 일정부분 증가하더라도, 최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는 등 특례보증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요인이 적다는 점에서, 2025년말 예상 공급규모는 약 1.5조원 규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은 2025년 연간 예상 공급규모를 감안할 때, 3조원을 공급할 것을 전제로 편성된 동 사업의 대위변제 소요예산은 일부 감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구체적으로, 2025년도 예상 공급규모를 1.5조원에 해당할 경우 2026년도 예상 부실순증액은 258억원에서 151억원으로 감소하고, 이로 인한 대위변제 소요액은 당초 182억 9,800만원에서 107억 4,000만원으로 감소함.

○ 따라서, 대위변제 소요액 감소분에 해당하는 약 76억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위기대응 특례보증 대위변제 소요액 재산출 내역〉

구분	기존	재산출
2025년 예상 공급규모	3조원	1.5조원
부실순증액	258억원 2026년초 보증공급액 (약 3조원) × 예상 공급부실률(0.9%)	151억원 2026년초 보증공급액(약 1.5조원) × 예상 공급부실률(0.9%) + 2026년말 보증공급액(약 1.5조원) × 예상 공급부실률(0.1%)
대위변제 소요예산	182억 9,800만원 부실순증액(258억원) × 대위변제이행률(70.92%)	107억 4,000만원 부실순증액(151억원) × 대위변제이행률(70.92%)

(자료: 금융위원회)

제2장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 법정부담금(주택신용보증계정·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⁵³⁾, 면허료 및 수수료(주택신용보증계정)⁵⁴⁾: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영향을 반영한 기금 수입액 조정 필요

1)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법정부담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이 해당 기관에서 취급하는 주택자금대출 평균잔액에 일정한 출연요율을 곱한 금액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수입사업임.

○ 주택신용보증계정(이하 “주신보계정”이라 함) 내 법정부담금 수입에 대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2,407억 400만원(△22.6%)이 감소한 8,220억 3,900만원임.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이하 “주연보계정”이라 함) 내 법정부담금 수입에 대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53억 6,500만원(△5.6%)이 감소한 896억 8,500만원임.

□ “면허료 및 수수료”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일정 규모의 보증료를 징수하는 수입사업으로⁵⁵⁾, 주신보계정 내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에 대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236억 3,700만원(△13.0%)이 감소한 1,581억 600만원임.

53) 세부사업: 법정부담금(59-593)

54) 세부사업: 면허료 및 수수료(65-651)

〈2026년도 법정부담금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법정부담금	1,069,786	1,157,793	1,157,793	911,724	△246,069	△21.3
- 주택신용보증계정	985,429	1,062,743	1,062,743	822,039	△240,704	△22.6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84,357	95,050	95,050	89,685	△5,365	△5.6

(자료: 금융위원회)

〈2026년도 면허료 및 수수료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면허료 및 수수료 (주택신용보증계정)	125,958	181,743	181,743	158,106	△23,637	△13.0

(자료: 금융위원회)

□ (법정부담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 및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은행 등 주택 관련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매월 기금출연기준대출금⁵⁶⁾에 일정 출연요율을 곱한 금액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하고, 해당 금액은 기금 내 “법정부담금” 수입액으로 계상됨⁵⁷⁾.

56)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반환대출 및 중도금대출 등 기타 주택자금대출

57) 기금의 법정부담금 수입 중 주택담보대출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연보계정으로 수납되어 주택연금 관련 기금 운용에 활용됨. 주연보계정으로 수납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주신보계정으로 수납되는 구조임.

〈금융기관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 관련 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③ 제2조제11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차목부터 타목까지의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연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과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3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별표 1의 출연요율을 말한다.

②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법 제59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의 출연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이하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의 대출금. 다만, 다음 각 목의 대출금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대출금은 제외한다.

(각 목 생략)

2.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대출금

가.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건축·구입·임차(전세를 포함한다) 또는 개량하기 위한 대출금[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설정되는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금을 포함하되, 법 제2조제8호의2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대출금을 제외한다]

나. 주택사업자가 분양 또는 임대(임대)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기 위한 대출금. 다만, 제1호나목에 따른 대출금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대출금은 제외한다.

다. 사업주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무상대여를 포함한다)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또는 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라. 주택을 분양(임대를 포함한다)받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기 위한 대출금

마. 법 제2조제8호의 신용보증을 받은 대출금. 다만,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대출금. 다만, 가목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사. 그 밖의 주택자금 대출금

제4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시기 등) ①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매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된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경우: 해당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1의 출연요율

2. 제3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경우: (해당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1의 출연요율) -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제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①법 제59조의3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별표 2의 출연요율을 말한다.

②법 제59조의3제4항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이하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제외한다)의 다음 각 목의 대출금

가.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건축·구입하기 위한 대출금[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설정되는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금을 포함

하되, 제1호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나. 법 제2조제8호의 신용보증을 받은 대출금 중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건축·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다만, 가목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다. 법 제22조의2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대출금. 다만, 가목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라. 그 밖의 주택자금 대출금 중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건축·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제6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출연시기 등) ① 금융기관은 매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된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2. 제5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경우: (해당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2의 출연요율) × 100분의 20

- (면허료 및 수수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1조 및 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보증금액의 연 100분의 2 범위 안에서 보증종류,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보증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해당 금액은 기금 내 주신보계정의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액으로 계상됨.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수입 관련 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1조(보증료 등) ① 공사는 신용보증을 받는 자의 신용도와 기금의 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u>신용보증을 받는 자로부터 보증금액의 연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u> ② (생략) ③ 공사는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보증료의 납부기한까지 보증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 보증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연체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u>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6조(보증료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란 신용보증을 한 금액에 공사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가 정하는 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보증료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증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1. 신용보증 대상자의 신용도 2. 신용보증금액의 규모 3. 신용보증기간 ③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신용보증을 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연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연체보증료는 미납 보증료에 연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 검토의견

□ 최근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제어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를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 및 한도 제한,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및 한도 제한, 주택담보대출 적용 스트레스 금리 상향 등 일련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였음.

〈2025년도 주요 가계부채 관리 대책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 가계대출(금융권 자체대출 및 정책대출) 총량 관리목표 하향 감축 - 금융권 자체대출: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감축 - 정책대출(디딤돌, 버팀목, 보금자리론):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 ◦ 은행권 자율관리조치 전금융권 확대 시행 - 수도권·규제지역 내 유주택자(처분 조건부 1주택자 제외)의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LTV=0%) -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제한(1주택자 한정 은행자율 → 최대 1억원)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 제한(은행자율 → 30년) -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 6억원 제한 ◦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정책대출 포함) LTV 강화(80%→70%) ◦ 주택도시보증기금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최대한도 축소 ◦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90%→80%)
9·7 가계부채 추가 관리 강화 방안	◦ 규제지역 내 주담대 LTV 강화(50% → 40%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제한(LTV=0%) ◦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한도 2억원 제한 ◦ 금융기관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 시 적용되는 출연요율 개편(대출유형 기준 → 대출금액 기준)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26년 4월 시행 추진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주담대 한도 강화조치 차등적용(15억원 이하 주택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 2억원)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적용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1.5% → 3.0%) ◦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 ◦ 은행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 조기시행(2026년 4월 시행 → 2026년 1월 시행)

(자료: 2025년 6·27, 9·7, 10·15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및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내용 재구성)

○ 이러한 정책 기조는 정책모기지 상품을 포함한 금융권의 주택담보 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의 신규 공급 규모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시중 은행들은 정부 정책방향에 맞추어 가계대출, 특히 주택 관련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⁵⁸⁾.

□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는 필연적으로 주택 관련 대출 시장의 위축을 동반할 수 있으며, 이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핵심 수입원인 금융기관 출연금 및 보증료 수입 감소로 직결될 수 있음.

○ 금융기관 출연금(법정부담금) 규모는 주택 관련 대출 잔액에 연동되고, 보증료 수입(면허료 및 수수료) 역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규 보증 공급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임.

○ 따라서 2026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정책이 기금 수입액 규모에 미칠 영향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계획액 규모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2025년도 세 차례에 걸친 주요 가계부채 관리 대책 중 일부(9월 7일 및 10월 15일 발표)는 동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 제출(9월 3일) 이후 발표된 것으로, 추가 대책 발표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공급 규모가 실제로 축소된다면 관련 기금 수입 감소

58) 경향신문, “은행권, 가계대출 연말까지 더 조일 듯”, 2025. 10. 27.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27202100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뉴스1, “4분기 대출 문턱 높아진다…한은 “6·27 대책 여파, 주택·신용대출 강화 전망”, 2025. 10. 27.
(<https://www.news1.kr/economy/trend/5954251>)

가 불가피하므로, 2026년도 금융기관 출연금 및 보증료 수입 계획액을 현실적인 시장 상황과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 보다 구체적으로, 금융기관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에 연동되는 법정부담금의 경우, 금융권 전반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목표 하향, 수도권·규제지역 중심의 직접적인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강화,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에 따른 은행 여신심사 강화 조치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2026년도 중 법정부담금 수입의 일정 수준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2025. 9. 7.)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2026년 4월 시행 추진)을 통해 주택도시보증·은행 등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법정출연금의 기준요율 체계를 개편할 계획인데, 기존의 대출유형⁵⁹⁾별 차등 요율 체계를 금융권 평균 대출금액 대비 기관별 대출금액 비중에 따라 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개편안은 금융기관의 고액 주택담보대출 취급 유인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공급 규모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59) 고정·변동금리, 분할상환·만기일시 등

〈금융기관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개편 계획(안)〉

구분	현행			개편 후	
기준 요율	구분		요율(%)	구분	요율(%)
	비거치식 분할상환·고정금리인 경우		연 0.05	평균 대출액 ¹⁾ 이하	연 0.05
	비거치식 분할상환· 고정금리가 아닌 경우	주택도시기금 대출금	연 0.26	평균 대출액 초과~2배 이내	연 0.25
		그 외 대출금	연 0.30	평균 대출액의 2배 초과	연 0.30

주1) 출연대상 금융기관의 전년도 평균 주담대 대출액을 산정(매년 3월)하고, 당해연도 출연료 산출(매년 4월)시 반영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별표1 및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9. 7.) 내용 재구성)

○ 또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공급 규모 축소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규 신용보증 공급 역시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바, 공사의 신용보증⁶⁰⁾ 대상금액에 연동되는 보증료 수입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예기치 못한 경제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한 계획액의 일부 증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2026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운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기금운용계획액 규모 증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단계에서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대책이 기금 수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관련 수입 계획액을 적정 수준으로 축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60) 개인보증(전세자금, 구입자금 등), 사업자보증(건설자금, PF), 임차보증금반환보증

제3장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 기타특별회계전입금⁶¹⁾: 정부 출연금 미편성에 따른 기금
건전성 악화 우려

1)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기타특별회계전입금”은 농어업인의 보증 지원에 필요한 기본재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이하 “농특회계”)에서 기금으로 재원을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500억원(△100.0%)이 감소하여 미반영됨.

〈2026년도 기타특별회계전입금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기타특별회계전입금	30,000	150,000	150,000	-	△150,000	△100.0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0조⁶²⁾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의 운용배수⁶³⁾ 상한을 20배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

61) 세부사업: 기타특별회계전입금(91-912)

6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0조(보증의 한도) ① 관리기관의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3) 보증 규모 대비 기본재산, 보증기금의 건전성과 자본 적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운용배수가 낮을수록

용보증규정」 제12조⁶⁴⁾는 추가적 보증여력의 확보, 기본재산 가치변동 대응 필요성 등에 따라 적정운용배수를 12.5배⁶⁵⁾로 설정·운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그런데, 농신보의 운용배수⁶⁶⁾는 2014년~2019년까지 농특회계로 1조 6천억원 반환, 보증사업 활성화 등에 따른 기본재산⁶⁷⁾ 감소 및 보증잔액 증가 등으로 2019년부터 적정운용배수인 12.5배를 초과하여 운용 중임.

기금이 건전하고 보증 여력이 큰 것으로 해석됨.

64) 「신용보증규정」

제12조(보증총한도) ③ 제2항의 보증총액한도의 적정한 수준은 12.5배로 한다.

65) 현행 적정운용배수는 바젤Ⅱ 기준 BIS비율의 규제 수준이 8%임에 착안하여 BIS비율의 역수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 운용배수를 8%의 역수인 12.5배로 설정한 것임.

66) 보증 규모 대비 기본재산. 보증기금의 건전성과 자본 적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운용배수가 낮을수록 기금이 건전하고 보증 여력이 큰 것으로 해석됨.

67) 기본재산은 전년도 기본재산과 당기순이익금, 정부출연금과 금융기관 출연금으로 구성됨.

〈연도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결산 현황〉

(단위: 억원, 배)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수입	정부출연금	△3,000	△2,000	△2,000	1,000	1,300	1,300	0	300
	금융기관출연금	1,222	1,240	1,269	1,386	1,833	1,971	2,118	2,247
	보증료, 이자수입등	1,114	1,085	1,042	957	810	756	1,610	1,372
	계	△664	325	311	3,343	3,943	4,027	3,728	3,919
지출	보증보조비용	746	1,585	1,910	1,182	468	571	1,263	106
	구상채권상각비	1,466	2,125	2,668	2,197	1,896	1,849	3,104	3,271
	관리업무비 등	741	666	590	566	633	660	626	635
	계	2,953	4,376	5,168	3,945	2,998	3,078	4,993	4,012
기본재산(A)		19,357	15,306	10,449	9,847	10,792	11,741	10,476	10,384
보증잔액(B)		133,968	148,906	161,117	164,399	163,585	171,852	176,420	179,913
운용배수(B/A)		6.9	9.7	15.4	16.7	15.2	14.6	16.8	17.3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이처럼 농신보의 운용배수가 적정 수준을 지속적으로 초과하게 되는 경우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기금의 기능을 제약할 수 있는 문제⁶⁸⁾가 있는데, 이에 농신보는 적정 수준을 지속 초과하고 있는 기금의 운용배수를 안정화하기 위하여 농특회계로부터 2020년도부터 2025년까지 총 5,400억원의 출연금을 전입 받고 있음.

○ 다만, 농신보가 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출연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6.7배에 달했던 운용배수는 2025년말 기준으로 16.7배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기금 건전성 개선의 가시적

68)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및 「신용보증규정」에 따르면, 동 기금을 통하여 같은 농림수산업자에게 보증할 수 있는 한도는 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이 원칙이나, 적정운용배수 내에서는 개인 30억원, 법인 70억원까지 예외보증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운용배수가 적정운용배수(12.5배)를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예외보증을 중단하여야 함. 다만, 금융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과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농림수산업자의 사업과 자금에 대해서는 적정운용배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20년도부터 매년 예외보증 지원의 운용시한을 연장하고 있는 실정임.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음.

〈연도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기타특별회계전입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획 액		수납액	운용배수 (연말 기준)
	당초	수정		
2020년	-	100,000	100,000	16.7
2021년	130,000	130,000	130,000	15.2
2022년	130,000	130,000	130,000	14.6
2023년	-	-	-	16.8
2024년	30,000	30,000	30,000	17.3
2025년	150,000	150,000	150,000	16.7
합계			540,000	

주: 2025년도 운용배수는 추정치임.

(자료: 금융위원회)

□ 그런데, 농신보의 운용배수가 여전히 적정 수준을 초과하여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6년도 기타특별회계전입금은 전액 감액되어 수입 계획안에 미반영⁶⁹⁾되었음.

○ 최근 고물가, 고금리 및 경기침체 등에 따라 대위변제 및 불건전 보증⁷⁰⁾이 지속적으로 증가⁷¹⁾하는 등 경영 한계 농어업인의 부실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내년도 농신보의 운용배수는 법정 운용배수인 20배에 근접한 18.1배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69) 금융위원회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계획액 1,500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였으나, 최종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음.

70) 불건전보증이란 보증부채무의 원리금이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 등 보증사고 사유가 발생한 보증을 의미함. 구체적으로, 보증사고 사유로는 ① 보증부채무의 원리금이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 ② 채권자가 보증부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때, ③ 채무자에 대하여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의한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④ 채무자에 대한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 개인회생절차 등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⑤ 채무자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결정, 경매신청 또는 채무자의 폐업 등 보증부채무의 채권보전이 우려되는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등을 들 수 있음.

71) 농신보 대위변제 및 불건전보증 현황

- 참고로, 전년 수준의 정부 출연을 전입받을 경우 운용배수는 15.8배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적정운용배수 수준까지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4,600억원의 출연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됨.

〈2026년말 기준 농신보 운용배수 시나리오별 전망〉

(단위: 억원, %)

구 분	현재	1,500억원 전입시 (전년 수준)	4,600억원 전입시 (적정 운용배수)
보증잔액(A)	186,165	186,165	186,165
기본재산(B)	10,293	11,793	14,893
운용배수(A/B)	18.09	15.79	12.50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그러므로, 중장기적 측면에서의 농신보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서는 다음의 제도개선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첫째, 정부출연금 규모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출연금 산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농신보의 보증공급은 농림수산물식품부 등 관계부처의 투융자 정책에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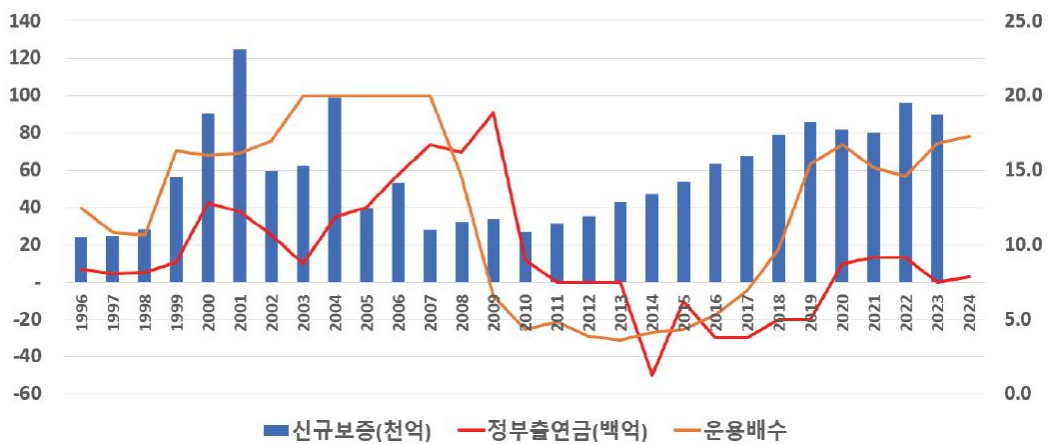
구분	2021	2022	2023	2024
보증잔액(A)	163,585	171,852	176,420	179,913
대위변제(B)	3,021	2,904	4,074	4,196
불건전보증잔액(C)	526	789	1,053	1,390
대위변제율(B/A)	1.85	1.69	2.31	2.33
불건전보증비율(C/A)	0.32	0.46	0.60	0.77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큰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금은 정부의 투융자 정책과 연계되지 않고, 운용배수의 악화 등 사후적 요인에 대응하여 지원되는 구조⁷²⁾이므로, 금융위원회와 농신보는 재정당국과 협조하여 향후 기금의 안정성과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 출연금 산정기준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농신보 정부 출연 현황〉

(단위: 천/백억원(좌), 배(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운용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2025. 1., p.81.)

- 둘째, 정부가 2020년 이후 상당 규모의 출연금을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용배수 정상화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으므로, 향후 금융위원회와 농신보는 재정운용 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신보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5,400억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용배수가

7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운용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2025. 1.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등 기금 건전성 제고 성과가 뚜렷하지 않음.

- 이를 고려할 때, 향후에도 농신보의 자구노력 없이는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기금 건전성을 위한 정부와 농신보의 기금 건전성 개선방안 마련이 수반될 필요가 있을 것임.
- 한편, 국회도 최근 2년 동안 결산심사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농신보에게 기금 건전성 제고 및 중장기 관리계획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내년 계획안에 기금 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반영되지 않는 등⁷³⁾ 정부의 후속조치가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금융위원회와 농신보는 기금 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최근 농신보 건전성 관련 국회 결산 심사 시정요구사항〉

회계연도	시정요구사항
2023	○ 금융위원회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
2024	○ 금융위원회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운용배수 관리,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 순신규보증총량제 정착 등을 포함한 중장기 관리계획을 조속하게 수립할 것

주: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은 2025년 8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며, 10월말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중임.

(자료: 각 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73) 금융위원회는 2025년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시 중장기 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8,000만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였으나, 최종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음.

제4장 공적자금상환기금

1. 기타경상이전수입⁷⁴⁾: 현실적인 수입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안 편성 필요

1)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수입을 말하며,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조원(26.3%) 증가한 4조 8,000억원임.

〈2026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B-A)	
기타경상이전수입	5,190,000	3,800,000	3,800,000	4,800,000	1,000,000	26.3

(자료: 금융위원회)

- 「국가재정법」 제13조⁷⁵⁾에 따라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74) 세부사업: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75) 「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①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은 제외한다. (각호 생략)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입·전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법률 제6807호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10조⁷⁶⁾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잔여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일부를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은 2021년부터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부터 매년 전입금을 수납하고 있으며, 2025년 9월 기준 총 13.1조원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되었음.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 획 액(A)	계 획 현 액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율(C/A)
2021	1,250,000	1,250,000	1,258,072	1,258,072	100.6
2022	2,400,000	2,400,000	2,400,000	2,400,000	100.0
2023	2,600,000	2,600,000	2,600,000	2,600,000	100.0
2024	4,250,000	4,250,000	5,190,000	5,190,000	122.1
2025 (9월 기준)	3,800,000	3,800,000	2,200,000	2,200,000	57.9
2026(안)	4,800,000	-	-	-	-
합 계	19,100,000	14,300,000	13,148,072	13,148,072	-

(자료: 금융위원회)

76) 「법률 제6807호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10조(상환기금의 청산) 상환기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청산하고, 잔여 자산 및 부채 그 밖의 권리·의무는 금융위원회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이하 이 조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이라 한다) 또는 예금보험기금 중 그 귀속주체를 정한다. 다만,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환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한 결과 상환기금의 청산 시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되는 잔여재산의 일부를 상환기금의 청산 전에 공적자금상환기금에 귀속시킬 수 있다.

2) 검토의견

□ 공적자금상환기금은 금융구조조정과 관련해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담한 채무 상환을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49조원을 예수받아 예금보험공사(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45.7조원)와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⁷⁷⁾, 3.3조원)에 각각 출연하였음.

이후 공적자금상환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49조원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세계잉여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전입금 등 수입 재원⁷⁸⁾을 활용해 상환하고 있음.

□ 2025년 말 예상되는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채무 잔액은 14.6조원(원금)인데,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근거 법률인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의 효력만료일이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⁷⁹⁾ 정부는 이 기한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부채 상환을 완료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는 원금 기준으로, 2026년 7.1조원, 2027년 7.5조원을 각각 공적자금관리기금에 상환한 후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청산한다는 계획임.

77) 부실채권정리기금은 2013년 2월에 청산됨.

78)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2.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른 세계잉여금
3. 제6조에 따른 정부의 회계로부터의 출연금
4.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5.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른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6.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7. 제9조에 따른 일시차입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 동 기금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출연한 자금 중 반환받은 자금

79) 「법률 제6804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7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원리금 상환내역 및 상환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9월말기준)	2026* (계획안)	2027* (계획안)
원리금 상환내역	원금	6,290,225	6,402,465	8,345,572	8,842,338	4,464,924		
	이자	799,543	647,009	537,709	484,798	351,712		
원리금 상환계획	원금	6,290,225	6,402,465	8,345,572	9,840,902	5,997,739	7,148,632	7,464,805
	이자	844,790	703,109	651,458	549,755	438,282	204,012	74,095
잔액(원금)		38,648,264	32,232,982	28,011,614	20,611,176	14,613,437	7,464,805	-

*2026~2027년 계획안은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자료: 금융위원회)

□ 그런데, 동 기금의 2026년도 수입 및 지출 계획안을 보면, ① 일반회계 전입금, ② 특별회계 전입금 및 ③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전입금으로 총 7.4조원을 수납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원리금 총 7.3조원(원금 7.1조원, 이자 0.2조원)을 상환한다는 계획인데,

총 수입 중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전입금’의 비율이 64.7%에 달해, 부채 상환 채원과 관련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면이 있음.

〈2026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안〉

(단위: 백만원)

수입 계획안			지출 계획안	
일반회계전입금	특별회계전입금	기타경상이전수입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전입금)	부채상환	기타
2,498,794 (33.7%)	121,843 (1.6%)	4,800,000 (64.7%)	7,352,644 (원리금)	67,993
수입 합계 7,420,637 (100%)			지출 합계 7,420,637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 이와 관련하여, 실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전출 여력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2026년도 기금계획안에 따르면, 총 수입 4.89조원 중 필수 운영경비를 제외한 4.8조원(98.2%)을 공적자금상환 기금으로 전출할 계획임.

〈2026년도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안〉

(단위: 백만원)

2026년도 수입계획안		2026년도 지출계획안	
총 계	4,886,680	총 계	4,886,680
정부출자수입 (출자금융회사 배당금)	195,258	정리자문경비 등	2,699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15,089	인건비	2,542
법정부담금 (금융회사 특별기여금)	2,747,819	기금관리비	575
재고자산매각대 (출자금융회사 주식매각)	1,818,514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4,800,000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10,000	비통화금융기관예치	80,864

(자료: 금융위원회)

관련 수입계획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주요 수입 재원은 정부출자수입(1.95조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금융회사 특별기여금⁸⁰⁾ 수입(2.7조원), 출자금융회사(한화생명보험, 서울보증보험) 주식매각을 통한 재고자산매각대(1.8조원)인데,

80)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①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특별기여금으로 공사에 내야 한다.

출자금용회사(한화생명보험, 서울보증보험) 배당금 수입인 정부출자
수입과 금융회사 예금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금융회사 특별기여
금 수입의 경우에는 특별한 금융환경 변화만 없다면 계획안에 따른 징
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반면, 출자금용회사(한화생명보험 및 서울보증보험) 주식매각을 통한
재고자산매각대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입계획안 달성 가
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재고자산매각대 산정근거를 살펴보면,
한화생명보험 보유지분(10%) 전체를 매각하고,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에는 총 보유지분(83.85%) 중 경영권 방어지분(50%+1주)을 제외한
33.85%의 지분을 2026년도 내에 매각한다는 계획임.

〈2026년도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재고자산매각대 산정근거〉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산정근거
한화생명보험 81)	434,285	86,857,001주(지분 10% 매각) × 5,000원
서울보증보험 82)	1,304,229	23,635,946주(지분 33.85% 매각) × 55,180원
수협중앙회 ⁸³⁾	80,000	2026년 국채 만기 도래 액면가 ※ 상환합의에 따라 공사가 이미 수령한 국채의 연도별 만기가액
합계	1,818,514	

(자료: 금융위원회)

81) 예금보험공사는 한화생명보험에 대해 3조 5,5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는데, 2017년 이후 지분 10%에
대한 매각이 더이상 진행되지 않아, 공적자금의 미회수액 규모가 1조 299억원에 이름.

82) 예금보험공사는 서울보증보험에 대해 공적자금 10조 2,500억원을 지원했지만, 2025년 3월에 보유지분
(93.85%) 중 10%를 매각하는데 그쳐, 현재 미회수액 규모는 5조 916억원임.

83) 수협중앙회는 2022년 9월 예금보험공사 보유 잔여지분에 대해 국채로 상환을 완료하였으며,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은 수령한 국채의 연도별(2023년-2027년) 만기 도래시에 현금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있음.

그런데, 한화생명보험의 경우 매각단가를 5천원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현재(2025년 11월) 주가가 3천원대⁸⁴⁾ 수준이므로 매각 가격을 과다 추계한 것으로 보이고,

서울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지분 33.85%를 1년 내에 처분한다는 계획인데, 의무보호예수기간⁸⁵⁾이 2026년 3월에 끝나므로 실제적인 주식 처분 가능 기간은 9개월뿐이고, 대량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분 33.85%를 9개월 내에 처분한다는 계획은 다소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임.

□ 이와 같이, 금융위원회는 과다계상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수입계획안을 근거로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기타경상이전수입(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전입금)을 4.8조원 편성했는데,

이 경우, 한화생명보험과 서울보증보험 주식매각 실적이 저조할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부채 상환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 금융위원회는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늘리는 등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부채 상환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법률상 기한(2027년 말) 내에 공적자금상환기금이 청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84) 2025년 11월 3일 시가 기준 3,040원

85) 서울보증보험은 2025년 3월 기업공개를 통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고,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 후 1년 동안은 소액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최대주주 등의 보유 주식 매도가 제한됨.

제5장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 기금관리비⁸⁶⁾: 기금 청산을 위한 철저한 준비 필요

1)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기금관리비”는 기금 운용을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사업추진비 등 기본적인 경비로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3억 1,600만원 (122.0%) 증가한 5억 7,500만원임.

〈2026년도 기금관리비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액		2026년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기금관리비	257	259	259	575	316	122.0

(자료: 예금보험공사)

2) 검토의견

□ 기금관리비가 전년 대비 3억 1,6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의 주된 이유는 일반연구비(260-01) 3억 3,300만원이 신설되었기 때문임.

〈2026년도 기금관리비 목별 계획안〉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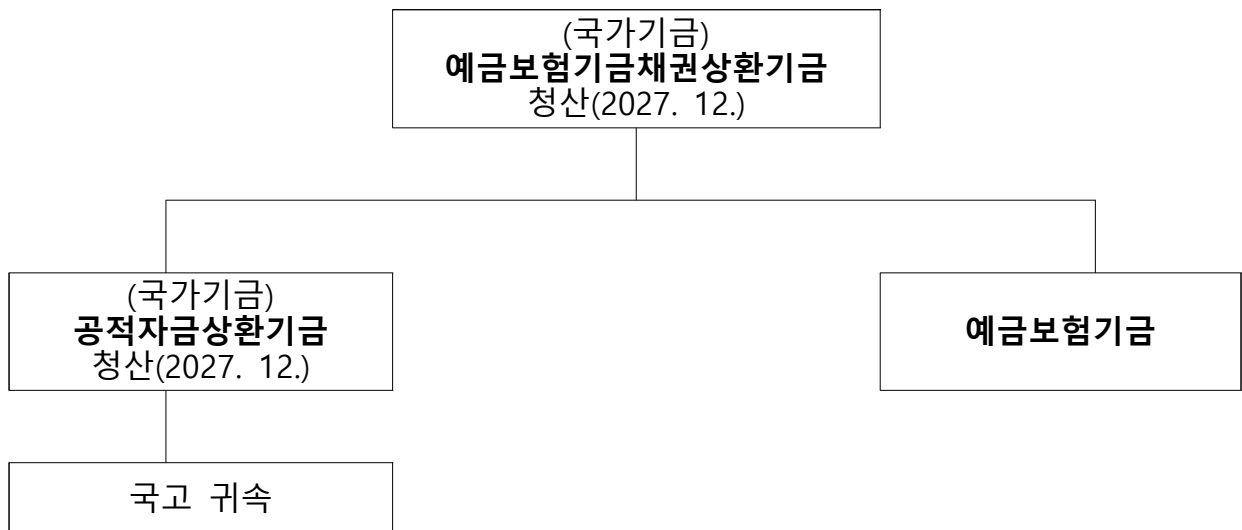
목별 분류	2024 집행액	2025 계획현액	2026 계획안
수용비	234	205	191
여비	4	33	33
업무추진비	20	22	21
일반연구비	-	-	333
합계	257	259	575

(자료: 예금보험공사)

86) 세부사업: 기금관리비(3575-201)

- 예금보험공사는 일반연구비(260-01)의 용도와 관련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공적자금상환기금 모두 2027년 말에 청산될 예정이므로, 청산과 관련된 법률 및 회계 문제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힘.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청산 시에 그 잔여 자산 및 부채의 귀속주체를 ‘공적자금상환기금’ 또는 ‘예금보험기금’ 중에서 정해야 하는데,⁸⁷⁾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귀속되는 잔여 자산의 경우에는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라 국고로 귀속될 것임.⁸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청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방법〉



87) 「법률 제6807호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10조 (상환기금의 청산) 상환기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청산하고, 잔여 자산 및 부채 그 밖의 권리·의무는 금융위원회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이하 이 조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이라 한다) 또는 예금보험기금 중 그 귀속주체를 정한다. (단서 생략)

88) 「법률 제6804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7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15조(기금의 청산) 기금을 청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참고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잔여 자산의 귀속주체 중 하나로 ‘예금보험기금’이 포함된 것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납부한 특별기여금⁸⁹⁾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 원활한 기금 청산을 위해서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재정 상황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데,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현재 ① 부채는 없는 상태이고, ② 2027년 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특별기여금을 계속 수납하며, ③ 기금의 보유자산으로는 출자금융회사(서울보증보험, 한화생명보험 등) 지분과 기금의 자회사인 KR&C⁹⁰⁾가 보유 중인 대출채권 및 손해배상채권 등이 있음.

89)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①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특별기여금으로 공사에 내야 한다.

[법률 제6807호(2002. 12. 26.)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① 부보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200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채무로 한정한다)를 정리하기 위하여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설치한다.

② 상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4. 제30조의3에 따라 받은 특별기여금

90) 케이알앤씨는 부실금융회사의 효율적 정리를 목적으로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상환기금의 자회사이며, 부실금융회사의 자산·부채의 인수, 예금 대지급, 인수 채권 추심 등의 업무를 수행함.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출자지분 관련 잔여지분(2025년 8월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원액	회수액 (회수율)	잔여지분		
			주식 수	지분율	평가액(예상치)
서울 보증보험	10,250,000	5,158,367 (50.3%)	58,547천주	83.85%	2,555,565 (단가 43,650원 적용)
한화생명	3,550,000	2,520,098 (71.0%)	86,857천주	10%	272,297 (단가 3,135원 적용)
수협	1,158,100	560,700 (48.4%)	(국채상환)		597,400 (잔여국채 액면가)
합 계					3,425,262

(자료: 예금보험공사)

〈KR&C 보유 자산(2025년 8월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자산	보유액
대출채권	원화 대출금, 서울보증보험CP 등	1,090,000(채권 원금 기준)
손해배상채권	부실책임자 손해배상채권	1,041,600(채권 원금 기준)
유가증권	매도가능 주식	43,500(2025.반기결산 장부가)
부동산	사옥 등	60,200(2025.반기결산 장부가)
합 계		2,235,300

(자료: 예금보험공사)

반면, 공적자금상환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채무액 14.6조원
(2025년말 기준 예상채무액)이 있으며, 기금 보유자산은 없는 상황임.

〈공적자금상환기금 부채 상환내역 및 상환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9월말기준)	2026* (계획안)	2027* (계획안)
원리금 상환내역	원금	6,290,225	6,402,465	8,345,572	8,842,338	4,464,924		
	이자	799,543	647,009	537,709	484,798	351,712		
원리금 상환계획	원금	6,290,225	6,402,465	8,345,572	9,840,902	5,997,739	7,148,632	7,464,805
	이자	844,790	703,109	651,458	549,755	438,282	204,012	74,095
잔액(원금)		38,648,264	32,232,982	28,011,614	20,611,176	14,613,437	7,464,805	-

*2026~2027년 계획안은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자료: 금융위원회)

□ 또한, 기금 청산 시에는 그 보유 자산을 가능한 현금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보유 중인 서울보증보험 주식의 경우 「지분매각 추진계획」에 따라 2028년 이후에나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

<서울보증보험 지분매각 추진계획(2024.3.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

방식	IPO(기업공개)	소수지분 추가 매각	경영권 지분매각
시기	2025년 상반기 이내	의무보호예수 해제('26.3.14)** 이후~ 상환기금 청산시점('27년말) 이내	향후 검토
물량	10% 이상 (시장상황 및 수요예측 결과 등에 따라 조정 가능)	최대 33.85% (단, 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50%+1주 이상

(자료: 예금보험공사)

* 시장상황, 보증보험시장 관련 정책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 2025. 3. 14 IPO 시 의무보호예수기간 1년 설정

KR&C 보유 자산의 경우에도 단기간에 현금화 하기 쉽지 않은 자산이 있을 수 있어, 기금 운용 종료시점(2027년 말)까지 전체 자산을 현금화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현물자산 상태로 기금의 귀속주체를 정하는 방식에 대하여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예금보험공사는 2026년도에 추진하는 연구용역을 통해 기금 잔여 자산 귀속주체 및 현물자산 처리 방식 등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공적자금상환기금이 기한(2027년 말) 내에 안정적으로 청산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임.

제6장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1. 저축장려금⁹¹⁾: 성과지표(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지급액) 재검토 필요

1)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저축장려금” 사업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게 만기도래 시 저축기관(농·수협, 산림조합)이 지급하는 기본금리 외에 법정장려금⁹²⁾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44억 9,200만원(△9.0%) 감소한 455억 9,4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저축장려금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저축장려금	62,429	50,086	50,086	45,594	△4,492	△9.0

(자료: 금융위원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정부출연금, 한국은행 출연금 및 기금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하는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⁹³⁾는 정부가 매년 저축장려금으로 필요한 금액의 2분의 1 이상을

91) 세부사업: 저축장려금(1631-301)

92) ① 일반농어민: 연 0.9%(3년만기) / 1.5%(5년만기), ② 저소득농어민: 연 3.0%(3년만기) / 4.8%(5년만기)

9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③ 정부는 매년 저축장려금으로 필요한 금액의 2분의 1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 결과 생긴 결손금(缺損金)은 다음 해에 전액 보전(補填)하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저축장려금의 지급이 종료되는 회계연도까지 매년 제9조에 따른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그 잉여금 및 적립금에서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기금에 출연하고, 한국은행이 그 나머지를 출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1:1의 비율로 출연되고 있음.

〈저축장려금 자원 및 지급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9.
재 원	정부 출연금	33,872	34,112	26,615	27,033	31,463	24,147
	한국은행출연금	33,872	34,112	26,615	27,033	31,463	22,000
	기금운용수익	17	12	23	132	118	124
저축장려금지급액		65,842	68,232	54,277	51,122	61,812	39,532
만기 지급액		64,441	67,047	53,068	49,772	60,627	38,644
중도해지 지급액		1,401	1,185	1,209	1,350	1,185	888

(자료: 금융위원회)

2) 검토의견

□ 정부는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를 작성⁹⁴⁾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과 관련해, ‘저축장려금을 지급하여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한다는 프로그램 목표를 정하고, 성과지표로서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지급액’을 설정하고 있음.

또한, 저축기관⁹⁵⁾에서 제출한 해당 연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만기도래

94)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95)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예정자료'에 기초해 저축장려금 지급예상액을 산출하여 해당 연도 목표치로 설정하였음.

- 동 기금 성과계획서에 따른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5년간의 성과 달성도를 살펴보면, 2022년을 제외하고는 매해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위원회가 '농어민 재산 형성 지원'이라는 프로그램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	'21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지급액(억원)	목표	666	658	546	531	618	501	456	만기도래자에 대한 저축장려금 지급예상액
	실적	677	682	533	541	624	-	-	
	달성도	101.7	103.6	97.6	102.0	101.0	-	-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 그런데,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현황을 보면, 가입계좌 수가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저축 불입액 역시 2022년 이후로 감소 추세에 있음.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현황〉

(단위 : 좌 수,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가입 계좌 수	276,621	267,416	253,570	234,776	221,934	212,041
불입잔액	10,319	11,588	12,949	13,196	12,869	11,542

(자료: 금융위원회)

또한,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 역시 「2025년 기금준치평가보고서」에서 동 기금의 ‘농어민 저축 장려 및 재산 형성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최근에 가입 계좌 수가 감소하는 추세로 보아 기금의 목적을 유효하게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⁹⁶⁾

〈2015~2023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 현황〉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가입자수 (계좌 수 기준, 천좌)	346	317	296	274	277	267	253	235	222
전체 농어민 가구수주) (천가구)	1,234	1,208	1,179	1,154	1,138	1,182	1,178	1,166	1,140
가입률(%)	28.1	26.3	25.1	23.9	24.3	22.6	21.5	20.1	19.5

주: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기준('23말까지 발표)

(자료: 금융위원회, 「2025년 기금준치평가보고서」,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 2025. 5. p.61)

□ 이와 같이, 동 기금의 사업 실적이 감소 추세에 있고, 기금 목적 달성 여부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있음에도, 성과평가에서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성과지표 및 그 목표치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보임.

□ 금융위원회는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지급액’을 성과지표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 2026년도 성과계획서에서 저축가입 시 약정한 저축 장려금이 만기도래 시에 원활히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96) 「2025년 기금준치평가보고서」,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 2025. 5. p.61

지표라고 설명함. 즉, 약정한 장려금을 금융위원회가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라는 설명임.

그러나, 저축장려금의 지급은 법률⁹⁷⁾에 따른 정부의 의무지출 사항이므로, 금융위원회의 노력이 별도로 투입되어 성과가 나타났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동 성과지표의 설정 취지를 저축장려금 지급액 규모 확인을 통해 농어민 재산형성 기여도를 확인하겠다는 의지라 상정한다 하더라도, 저축장려금은 저축가입 후 최소 3~5년 후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해당 연도 사업 추진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노력 정도가 반영된 지표로 보기 어려움.

□ 한편, 금융위원회는 성과 목표치를 산출할 때는 만기도래자에 대한 저축장려금 지급예상액을 사용하고, 실적치를 산출할 때는 만기도래자 뿐만 아니라 3년 이상 가입자 중 중도해지자⁹⁸⁾에게 지급한 저축장려금을 포함함으로써 목표치 대비 실적치가 과다하게 산정되고 있음.⁹⁹⁾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6조제2항¹⁰⁰⁾에 따라 성과지표는 사업의

97)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6조(저축장려금) 정부는 농어민이 제4조에 따른 저축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저축을 하였을 때에는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등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축 장려금(이하 “저축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정부는 저축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축장려금의 지급률 또는 지급 방법을 저축 계약 체결 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98)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중도해지자의 경우에도 3년 이상 저축한 경우에는 저축장려금을 지급함.

99)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농어가저축법령에 따라 3년 이상 저축한 경우에 한해 중도 해지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농어민의 저축 장려라는 취지를 고려하여 중도해지 지급액을 성과목표 달성도에 포함하였다고 설명함.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함. 또한,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의 직접적인 노력과 역량이 포함된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한편, 해당 연도의 사업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고, 목표치 설정의 경우에는 적극적 업무 수행의 관점에서 도전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설정한 성과지표(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지급액)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연도의 기관 노력 정도가 포함되지 않은 지표이며, ‘농어민 재산 형성 지원’이라는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 달성도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지표임.

참고로, 유사한 성격의 청년도약계좌 운용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사업의 경우, 성과지표로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유지율’을 설정하고 있음.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지급액’을 성과지표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농어민 재산 형성 지원’이라는 프로그램 정책목표의 달성도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100)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 ② 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당해 기관의 임무·전략 목표, 당해연도의 성과목표·성과지표 및 재정부문에 관한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객관적·정량적(定量的)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